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중국의 관세 및 수입통관제도의 문제점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Korea Companies under Problems of
China's Customs and Import Clearance System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趙 壹 霖

2016年 2月

중국의 관세 및 수입통관제도의 문제점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Korea Companies under Problems of
China's Customs and Import Clearance System

指導教授 羅 公 寓

趙 壹 霖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12月

趙壹霖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5年 12月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Korea Companies under Problems of
China's Customs and Import Clearance System

Il-Lim Jo
(Supervised by professor Kong-Woo La)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cember, 2015.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
December, 2015.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3
3. 논문의 구성 체계	4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국과 중국의 무역 현황	5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5
1. 관세법제 관련 선행 연구	5
2. 통관 및 통관절차 선행 연구	6
제2절 한국의 대중 무역 규모	8
1. 한국의 전체 무역 현황	8
2. 대 중국 주요 수출 품목 현황	10
3. 대 중국 주요 수입 품목 현황	11
제 3 장 중국의 관세 및 수입통관 제도	12
제1절 법적근거	12
1. 대외무역법	13
2. 관세법	20
제 2 절 수입통관절차 및 특징	34
1. 수입통관 절차	35
2. 통관서류 및 기타 요건	40
3. 통관검역 요건	44
제 3 절 수입통관상 비관세장벽	50
1. 비관세장벽 개관	50
2. 기술무역 장벽	51
2.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	69

제 4 장 중국의 수입통관 제도상 문제점과 한국기업의 시사점	72
제1절 중국의 수입통관상 문제점	72
1. 관련법규상 수출입규제	72
2. 기술무역에 따른 문제점	78
3. 수출입통관상의 문제점	81
제2절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87
1. 관련 법규상의 시사점	87
2. 기술무역장벽과 식품위생 조치상 시사점	89
3. 통관 절차상의 시사점	92
제 5 장 결 론	96
참고문헌	100

[표 차 례]

<표Ⅱ-1> 중국의 통관관련 선행 연구 검토	7
<표Ⅱ-2> 연도별 한국의 10대 무역교역국 상황	8
<표Ⅱ-3> 한국 수출입 총괄현황	9
<표Ⅱ-4> 한국 대 중국 수출입 현황 및 수치	10
<표Ⅱ-5> 대 중국 주요 수출 품목 현황	10
<표Ⅱ-6> 대 중국 주요 수입 품목 현황	11
<표Ⅲ-1> 중국의 관세 관련 법률체계	13
<표Ⅲ-2> 중국의 세율의 종류	33
<표Ⅲ-3 > 중국의 검험검역제도	46
<표Ⅲ-4> 중국의 주요 비관세 장벽	50
<표Ⅲ-5> 연도별 TBT 통보 및 특정무역현안 건수 추이	55
<표Ⅲ-6> 기술장벽의 일반적인 유형	56
<표Ⅲ-7> 중국의 인증제도의 종류	58
<표Ⅲ-8> 중국의 강제인증 품목	61
<표Ⅲ-9> China RoHS 적용 대상범위	64
<표Ⅲ-10> China RoHS와 EU RoHS 비교	65
<표Ⅲ-11> 대상자별 관리방법의 의무준수사항	66
<표Ⅲ-12> EU REACH와 China REACH 비교	68
<표Ⅲ-13> 중국의 위생검역규범과 WTO규범의 합치성 평가	70
<표Ⅲ-14> 중국 위생검역제도와 WTO 제도의 합치성	71
<표Ⅳ-1> 중국과 한국의 무역 분야 순위 비교	81
<표Ⅳ-2> 중국 수출입 소요기간	82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의 전개과정	4
<그림Ⅲ-1> 대중국 수출입 흐름도	17
<그림Ⅲ-2> 수입화물 검험검역 절차	48
<그림Ⅲ-3 > 수출화물 검험검역 절차	4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국가간의 무역에서 각 국가별 상이한 법규 및 복잡한 통관절차로 인해 무역 원활화가 방해된다. 1970년부터 각 지역적 시장개발 논의에서는 비관세장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관절차를 표준화와 간소화를 시키기 위해 OECD나 APEC 등 국제적인 기구로 무역원활화에 대해 연구 및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중국은 2001년 말 WTO에 가입하면서 개방경제체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점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은 날로 점점 커져가고 있고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엄청난 규모의 자국 내 시장의 필요로 많은 제품을 수입 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공장으로써 많은 제품이 수출 되고 있다.

2010년 세계 경기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0%대의 성장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대외수출을 촉진하고 필수품의 수입을 확대하며 FDI투자과 소비 증가율을 하락했지만 무역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의 지속적 확대를 강화하고 대외무역주체, 거래방식을 조정하면서 수입과정 중의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여 내수의 안정세를 유지했다. 2010년부터 중국은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GDP 2위로 부상하고 수출국 1위 지위를 갖게 되었다. 2013년 중국의 GDP는 9조3,300억 달러로 기록했으며, 1인당 GDP는 6,857불을 기록했다. 중국의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 가운데 GDP가 1조위안을 상회하는 지역은 24곳이며, 천진, 베이징, 상하이 등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넘는 도시는 65개인 바, 이 도시들의 총인구는 전 중국 인구(13.6억)의 23.0%인 3억1,268만명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시기부터 경제규모도 점차 확대되며 2007년까지 10%대 높은 성장을 시현했으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9~10% 정도의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최근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이 모두 불안양상을 보이며 경착륙 우려에 대한 중국은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발전해간다(穩中求進)' 는 목표로 경제발전 구조

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구조 개혁과 소비위주의 내수서비스 성장모델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 내수 시장의 구매력이 확충을 위해 임금비용인상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경제 성장률은 2012년 7.7%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7%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한 양국간 지리적 위치가 가까워서 사업 구조 등을 상호보완성이 있기 때문에 양국 교역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1996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교역대상국이 되었다. 2010년 한국 대 중국 수출액은 1,168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71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09년과 비교하면 수출은 34.8%, 수입은 31.9%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1년 대 중국 총 교역액은 2,206억 4,000만 달러로 2010년과 비교하며 17.1% 증가했으며 대 중국 수출은 2010년과 비교하며 14.9%증가한 1,342억 1000만 달러에 달했고, 수입은 864억 3,000만 달러로 2010년과 비교하며 20.8% 증가했다. 무역흑자는 447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5.6%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¹⁾.

즉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의 수출입통관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하며 상이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고 환경과 복잡한 관행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부담까지 항상 내재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투명성과 신속성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세관 통관절차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신속통관을 못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큰 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중국의 현행 수입통관에 관한 법과 제도 및 세관 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중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선진 통관제도의 도입한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의 최근 들어 선진국의 수입통관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방대한 영토와 행정제도의 미비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매우 경직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이 장차 선진국의 수입통관제도를 도입하여 수입물류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관세 및 통관제도의 법적 현황 및 특징에 대한 살펴보고 최근 중국정부 및 세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변

1) 통계자료 인용. <http://kita.net>.

경되는 통관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중국 관세, 통관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이다.

그리고 중국 해관 통관절차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신속통관을 못하고 기업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은 그동안 계속되어 왔다. 이런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통관절차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통관관련 법규, 비관세장벽 중 기술무역장벽과 식품위생조치, 검역 통관, 수출입통관 시 문제점 등을 연구하여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논문은 중국의 통관절차를 분석하여 해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문헌연구중 통관에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관세사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에 대한 발표된 자료와 국내외 논문 및 정기간행물, 인터넷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의 관련 자료는 중국 해관, 해관에서 출판한 통관지침서, 각종통관 출판물 등의 문헌을 연구, 참조해서 중국통관절차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응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중국해관 통관제도의 현황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중국통관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 연구구성 및 절차를 서술하였다.

제2장은 선행 연구검토, 중국과 한국의 무역 규모 현황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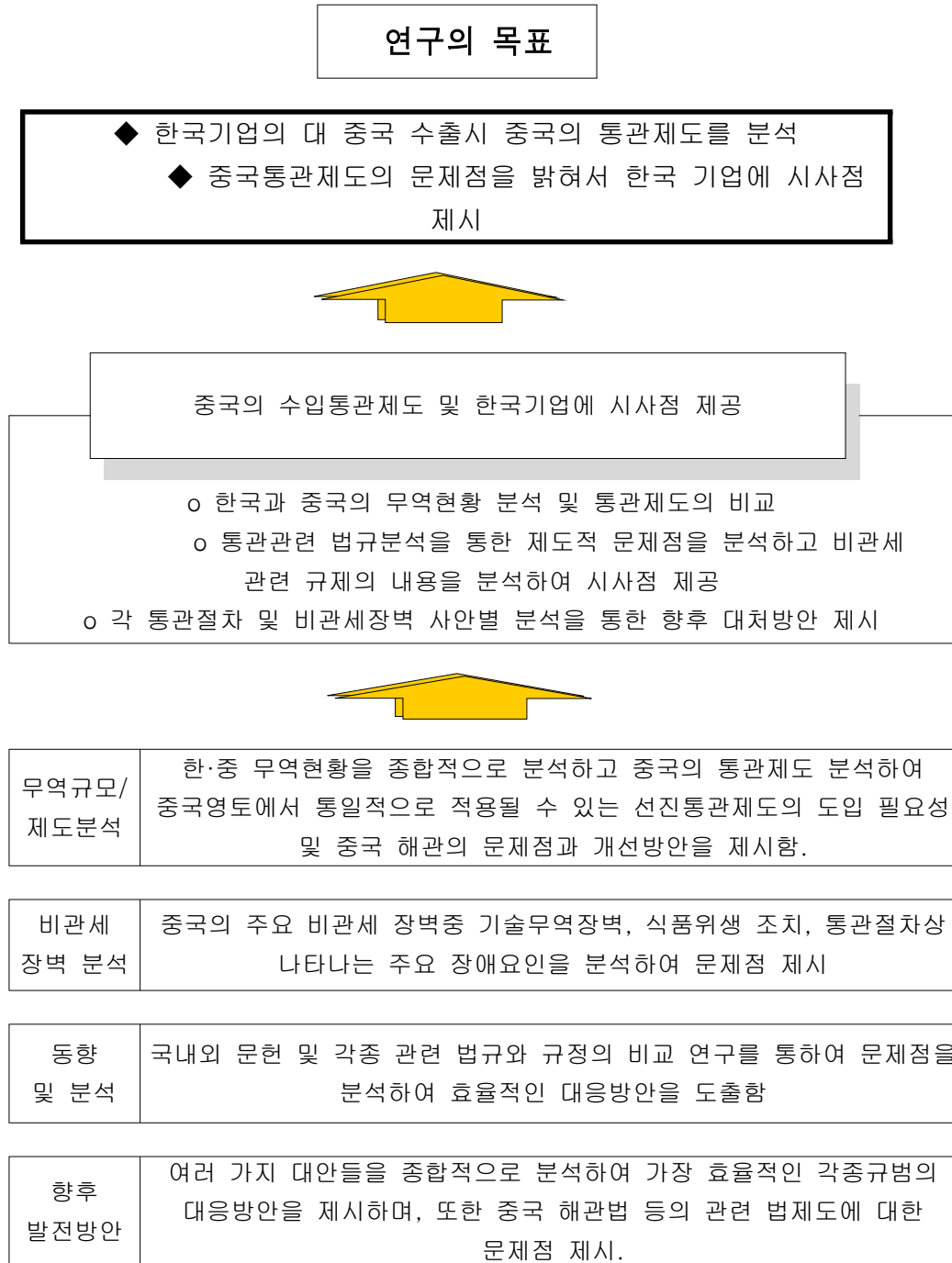
제3장은 통관관련 법령 등을 분석하여 통관제도의 법적 근거, 수입통관절차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수입통관제도상의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 통관제도의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향후 대 중국 투자진출을 기업들에게 중국 통관제도와 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5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3. 논문의 구성 체계

연구의 목표와 추진 전략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 I-1> 연구의 전개과정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국과 중국의 무역 현황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1. 관세법제 관련 선행 연구

ZHANG LEI은 중국의 통관제도에 대한, 특히 가공무역의 통관제도를 고찰하여 중국은 현행 제도에서 외국 기업이 통관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리스크 존재하는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양(2010)은 중국의 수출입통관에 대한 법적 제도와 세관 운영 실태를 연구하고 선진국의 통관제도를 중국에서 통일하게 도입하자고 하였으며, 그 필요성 및 그 당위성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최근 신 제정된 중국 해관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한국관세법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상현 · 포봉(2013)은 한국과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분석을 토대로, 사후적인 구제수단으로서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초급심에 해당하는 한국의 이의신청제도와 중국의 해관행정불복제도를 상세하게 고찰하는 동시에 주요 내용의 비교를 통해 양국 제도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어느 국가의 제도가 어느 면에서 더 합리적이고 납세의무자들의 권리를 잘 보호하고 있는가를 탐색함과 아울러 양국에서의 제도적 개선책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김민수 · 전진호(2013)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조세구조가 직접세 구조로 변해가는 측면에서 중국의 관세제도를 검증하기보다는, 중국 관세제도의 불안정성과 정치적인 상황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구조를 지적하고, 중국의 통관정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지를 논의하는 데에 그 중점을 두었으며, 중국의 관세정책 및 이의 운영이라 할 수 있는 중국세관의 통관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의 투자 및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조세 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 2013)은 중국의 관세 및 통관관련 법제 등을 총망라하고 강제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많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통관절차별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각 절차별 유의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2. 통관 및 통관절차 선행 연구

박호신 · 홍승린(2005)은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 투자에 있어서 조세제도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이 연구는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수출입세금 정책 및 이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한국의 투자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포봉 · 한상현(2014)은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내용분석을 토대로 중국과 한국 양국 제도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제도적 우위에 있는 한국의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관세행정구제제도상의 문제점을 유추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라공우 · 강진욱 · 이선표(2011)은 중국 통관제도 아주 복잡해서 모두 공급자, 생산자, 소비자, 납세자에게 큰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소극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해관법, 수출입관세조례, 수출입세금 징수관리 방법 등의 관련 법규를 연구하고 한국의 관세법제와 비교를 통한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홍재성 · 이용근(2011)은 먼저 한·중 수출입통관 절차상 상이한 법제와 절차를 이해하고 중국의 통관절차상 비효율성 등 문제를 지적하였다. 향후 중국 통관 행정업무의 변화를 추측하고 관세청이나 수출입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인식을 키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중국 세관장들의 인위적 통관절차상 문제를 인식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석민(2007)은 한·중 양국 수출입통관제도상은 다르게 법규를 적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관행 등이 아주 복잡하고 통관절차상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관운송에 리스크를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내재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중구정부와 해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통관물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한국 기업들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표 II-1> 중국의 통관관련 선행연구 검토

분	중국의 통관제도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및 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한국과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에 관한 비교연구(이의신청제도를 중심으로) - 연구자 : 한상현 · 포퓰(2013.2.28) -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및 특징의 비교, 한국 과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이의신청제도의 분석,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중국 통관정책에 대한 한국수출 기업의 대응방안 - 연구자(년도) : 김민수 · 전진호(2013) -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관세구조 및 통관절차상의 설명하며 중국통관 시 한국수출 기업의 대응방안의 제시하였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중국 수출입세금제도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 - 연구자(년도) : 박호신 · 홍승린 - 자료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관세제도와 중국의 증치세 및 소비세제도 고찰하고 한국기업의 대응 전략을 설명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중국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 연구자(년도) : 포퓰 · 한상현(2014) -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체계와 내용, 중국과 한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 중국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제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 연구 - 연구자(년도) : 라공우 · 강진욱 · 이선표(2011)-제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중국의 관세법제도상의 비교 설명함, 해관법, 수출입관세조례, 수출입세금징수관리 방법 등의 관련 법제도를 한국 관세법제와 비교 연구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중국 해관의 통관절차에 대한 문제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 홍계성 · 이용근-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자국 통관절차에 대한 개선 의지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중국 통관절차의 변화를 연구함 - 한국 대중국 무역현황을 분석함 - 중국의 수출입 통관 규정을 살펴보고 세관장들의 통관절차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함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WTO 무역원활화 논의에 따른 중국의 통관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김석민(2007)-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원활화의 측면에서 중국의 통관물류제도와 중국정부와 해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통관물류 개혁방안에 관하여 분석함 - 대중국 수출기업들에게 통관실무지침을 제공함.

8	과제명 : 中國的加工貿易通關制度及風險管理研究 - 연구자 : 張蕾 - 문헌조사	- 중국의 통관제도와 가공무역통관제도에 대한 설명함 - 가공무역통관상의 존재한 리스크를 지적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함
9	과제명 : 중국 수출입 통관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유양(2010.6)-문헌조사	- 중국의 수출입통관절차와 한중 통관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10	과제명 : 중국통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왕방(2012) - 문헌조사	- 중국해관의 발전연혁과 주요기능 및 주요원칙을 설명함 - 중국통관제도의 주요구조, 수속, 절차를 설명한다. - 중국 현재 실행하고 있는 대통관 정책 및 실시현황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문제를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 통관제도 해결해야 문제의 방안을 연구한다.

자료: 관련 논문을 참조하여 저자가 정리함.

제2절 한국의 대중 무역 규모

1. 한국의 전체 무역 현황

한국은 2003년부터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으며, 1993년 이래 대 중국 무역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2014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대상국이다.

<표Ⅱ-2> 연도별 한국의 10대 무역교역국 상황

순번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퍼센트	총계
	총계	857,282,065	686,618,082	891,595,922	1,079,626,746	1,067,454,265	1,075,217,949	1,098,179,113	100%	8,664,813
1	중국	168,319,172	140,949,301	188,411,436	220,617,247	215,107,159	228,922,375	235,369,927	20.3%	1,761,288,681
2	미국	84,741,393	66,689,305	90,218,749	100,776,732	101,865,521	103,564,404	115,568,126	10.3%	895,175,828
3	일본	89,208,862	71,198,354	92,472,398	107,999,876	103,159,137	94,691,645	85,952,101	10.1%	878,193,618
4	사우디아라비아	39,034,921	23,593,430	31,376,675	43,936,911	48,819,092	46,492,936	44,982,047	4.0%	345,154,696
5	대만	22,104	19,352	28,477	32,899	28,826	30,331	30,767	3.0%	256.94

		,840	,503	,579	,554	,816	,693	,167		9,467
6	홍콩	21,994,592	21,148,228	27,240,279	33,283,478	34,664,608	29,685,550	29,006,291	3.0%	256,474,121
7	싱가포르	24,654,740	21,488,773	23,093,732	29,805,688	32,564,327	32,658,463	35,053,064	2.8%	246,228,234
8	독일	25,291,829	21,119,324	25,007,076	26,463,506	25,155,065	27,243,833	28,869,676	2.8%	245,726,120
9	호주	23,171,649	19,999,212	27,097,843	34,480,149	32,238,402	30,347,706	30,695,531	2.8%	245,626,769
10	인도네시아	19,253,908	15,264,015	22,883,147	30,780,872	29,631,302	24,758,176	23,626,916	2.4%	208,034,889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이며 2014년 실적 기준으로 이 5개 국가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 실적의 47.7%를 차지한다. 중국은 2004년부터 한국의 최대수출대상국으로 되었고 2007년부터 중국은 수입에서도 최대수입국으로 되었다. 2013년부터는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했다.

<표 II-3> 한국 수출입 총괄현황

(단위: 천불)

순번	년도	수출 금액	수출 증가율	수입 금액	수입 증가율	수지
1	2008	422,007,328	13.6	435,274,737	22.0	-13,267,409
2	2009	363,533,561	-13.9	323,084,521	-25.8	40,449,040
3	2010	466,383,762	28.3	425,212,160	31.6	41,171,602
4	2011	555,213,656	19.0	524,413,090	23.3	30,800,566
5	2012	547,869,792	-1.3	519,584,473	-0.9	28,285,319
6	2013	559,632,434	2.1	515,585,515	-0.8	44,046,919
7	2014	572,664,607	2.3	525,514,506	1.9	47,150,101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RA

2014년 기준으로 한중 교역규모는 약 2,353억 7000만 달러이며 1992년 8월 수교 당시 63억 7000만 달러에 비해 약 37배 규모로 급성장하였다.²⁾

<표Ⅱ-4> 한국 대 중국 수출입 현황 및 수치

(단위: 천불)

순번	년도	수출 금액	수출 증감률	수입 금액	수입 증감률	수지
1	2008	91,388,900	11.5	76,930,272	22.1	14,458,628
2	2009	86,703,245	-5.1	54,246,056	-29.5	32,457,189
3	2010	116,837,833	34.8	71,573,603	31.9	45,264,230
4	2011	134,185,009	14.8	86,432,238	20.8	47,752,771
5	2012	134,322,564	0.1	80,784,595	-6.5	53,537,969
6	2013	145,869,498	8.6	83,052,877	2.8	62,816,621
7	2014	145,287,701	-0.4	90,082,226	8.5	55,205,475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RA

중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개방 및 진출개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은 것에 비해 현재는 대부분의 대기업을 포함한 매우 많은 해외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

2. 대 중국 주요 수출 품목 현황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상 전 5대 품목이 전체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이상하며 2014년 기준 한국대 중국 10대 수출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석유화학 중간원료,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으로 나타난다.

<표Ⅱ-5> 대 중국 주요 수출 품목 현황

(단위: 억 달러)

순위	2012		2013		2014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평판디스플레이	199.72	집적회로반도체	185.40	집적회로반도체	233.8
2	집적회로반도체	144.96	평판디스플레이	180.39	평판디스플레이	163.87
3	합성수지	71.13	합성수지	77.26	합성수지	75.64
4	석유화학중간원료	45.6	석유화학중간원료	62.13	석유화학중간원료	67.27
5	자동차부품	44.58	자동차부품	55.70	무선통신기기부품	61.69

2) (2014)

6	기초유분	39.56	경보신호기	54.27	자동차부품	60.9
7	무선통신기기부품	37.92	무선통신기기부품	50.26	경보신호기	42.7
8	제트유 및 등유	37.92	기초유분	44.62	기초유분	42.11
9	석유화학합성원료	36.69	제트유 및 등유	33.23	광학기기부품	24.58
10	경보신호기	36.25	석유화학합성원료	27.54	기타 전자응용기 기	23.13

주: MTI 4 단위 기준 자료: 통계청, KOTRA

3. 대 중국 주요 수입 품목 현황

2014년 기준으로 한국 대 중국 수입 물품은 집적회로반도체, 무선통신기기부품, 기타 정밀화학원료, 평판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 대중국 수출입품목 중의 무선통신기기 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등 품목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한중단 교역구조가 산업간 무역교역에서 산업 내 교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Ⅱ-6> 대 중국 주요 수입 품목 현황

(단위: 억 달러)

순위	2012		2013		2014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집적회로반도체	40.7	집적회로반도체	43.1	집적회로반도체	57.01
2	평판디스플레이	30.6	기타정밀화학원료	28.0	무선통신기기부품	42.01
3	기타 정밀화학원료	28.3	배전 및 제어기	26.7	기타 정밀화학원료	31.83
4	컴퓨터	25.6	평판디스플레이	25.7	평판디스플레이	27.27
5	배전 및 제어기	22.6	컴퓨터	25.3	컴퓨터	24.52
6	전선	19.6	직물제의류	21.1	열연강판	24.48
7	직물제의류	19.1	전선	20.5	직물제의류	21.94
8	개별소자반도체	18.5	개별소자반도체	19.4	개별소자반도체	21.19
9	열연강판	18.0	무선통신기기부품	16.3	개별소자반도체	20.43
10	철구조물	17.3	열연강판	15.8	무선전화기	16.81

중: MTI 4 단위 기준

자료: 통계청, KOTRA

제 3 장 중국의 수입통관 제도

제1절 법적근거

중국 국무원은 관세제도를 제정, 심의, 시행하는 정부기구이다. 국무원 산하의 관세세칙위원회로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세무총국 등 8개 기관 차관급 인사로 구성되며³⁾, 관세제도의 전반적인 구상은 국무원이 제정하며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 조정은 관세세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의 수출입세칙과 수입세율표의 세목, 세칙, 세율을 조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해서 비준 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잠정세율의 대상품목 및 기한, 세율, 반덤핑세, 보복관세 및 기타 세금관련 관세조치 등이 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의 회의를 소집하며 수정할 필요한 관세세칙이 있으면 국내의 생산부문과 사용부문 또는 대외무역부문이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검토한 후 국무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생산부문은 주요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상관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관세세칙위원회는 검증하고 심의하고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국무원에 이를 제출하여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관세 주요 관련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등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기본원칙을 정하고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기본틀과 관련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3) , 중국관세무역신보, 2012년 1월호.

<표 III-1> 중국의 관세 관련 법률체계

분류	주요법규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p> <p>(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p>	<p>대외무역법 해관법(관세법) 수출입 상품검역법 동식물검역법 고체 폐기물오염환경예방처리법 국경위생검역법 야생동물보호법 약품관리법 문물보호법 식품안전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법규</p> <p>(국무원에서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 직책범위에서 제정하는 기본 행정관리 규범성 문건의 총칭)</p>	<p>기술수출입관리조례 수출입관세조례 지적재산권해관보호조례 야생식물보호조례 수출관리조례 외환관리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국제조약</p> <p>(국가와 기타 국제법 주체 사이에 체결하는 국제법을 준칙으로 하며 그 상호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국제 서면 협의서를 지칭)</p>	<p>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 무역정책검토제도 교통공약 멸종위기야생식물국제협약 몬트리올의정서 정신약품국제공약 런던지침 로테르담공약 바젤공약 국제방직품 무역협정 세계지적재산권조약</p>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참조 정리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중국의 대외무역에 관한기본법으로 1994년 5월 12일 처음 제정되었으며,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 대외무역법이 2004년 4월 공포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⁴⁾

4) ,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 해외농업시리즈9: 중국농업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대외무역법은 11장 7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대외무역경영자, 제3장 상품수출입 및 기술수출입, 제4장 국제서비스무역, 제5장 대외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제6장 대외무역질서, 제7장 대외무역조사, 제8장 대외무역구제, 제9장 대외무역촉진, 제10장 법률책임, 제11장 부칙으로 되어 있다⁵⁾.

1) 법의 목적 및 범위

법에서 “대외개방의 확대,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질서의 수호, 대외무역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라고 하여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⁶⁾. 또한 “본 법은 대외무역 및 대외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며, 대외무역이라 함은 상품수출입, 기술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을 말한다.”라고 하여 적용법과 범위를 밝히고 있다⁷⁾. 이는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대외무역사업자

대외무역 사업자라 함은 “법에 따라 공상등록 또는 영업수속을 하였고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⁸⁾.” 또한 상품수출입 또는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사업자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주관부처가 위탁한 기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규정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규정하며, 대외무역사업자가 규정대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수출입상품의 통관신고 및 통과수속을 해주지 않는다⁹⁾. 그리고 대외무역 사업자

5) 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第十五号.

6) 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第一条 为了扩大对外开放, 发展对外贸易, 维护对外贸易秩序, 保护对外贸易经营者的合法权益, 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的健康发展, 制定本法.

7) 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第二条 本法适用于对外贸易以及与对外贸易有关的知识产权保护. 本法所称对外贸易, 是指货物进出口、技术进出口和国际服务贸易

8) 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第八条 本法所称对外贸易经营者, 是指依法办理工商登记或者其他执业手续, 依照本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从事对外贸易经营活动的法人、其他组织或者个人.

9) 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第九条 从事货物进出口或者技术进出口的对外贸易经营者, 应当向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或者其委托的机构办理备案登记; 但是, 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规定不需要备案登记的除外. 备案登记的具体办法由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规定. 对外贸易经营者未按照规定办理备案登记

는 타인의 위탁을 받고 경영범위 내에서 대외무역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¹⁰⁾. 따라서 대외무역사업자는 국가에 등록하고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3) 상품 및 기술 수출입

상품 및 기술의 수출입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수출입을 기본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제한을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관련 상품, 기술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¹²⁾.

- ① 국가 안전, 사회의 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② 인류 건강이나 안전 보호, 동물·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¹³⁾
- ③ 황금 또는 백은 수출입과 관련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 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④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국내자원의 고갈을 유효하게 방지하기 위해 수출제

，海 不予办理进出口货物的报关验放手续。

10)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第十二条 对外贸易经营者可以接受他人的委托, 在经营范围内代为办理对外贸易业务。

11)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第十四条 国家准许货物与技术的自由进出口。但是, 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12)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第十六条 国家基于下列原因, 可以限制或者禁止有关货物、技术的进口或者出口: (一) 为维护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或者公共道德, 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 (二) 为保护人的健康或者安全, 保护动物、植物的生命或者健康, 保护环境, 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 (三) 为实施与黄金或者白银进出口有关的措施, 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 (四) 国内供应短缺或者为有效保护可能用竭的自然资源, 需要限制或者禁止出口的; (五) 输往国家或者地区的市场容量有限, 需要限制出口的; (六) 出口经营秩序出现严重混乱, 需要限制出口的; (七) 为建立或者加快建立国内特定产业, 需要限制进口的; (八) 对任何形式的农业、牧业、渔业产品有必要限制进口的; (九) 为保障国家国际金融地位和国际收支平衡, 需要限制进口的; (十) 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 其他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 (十一) 根据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的规定, 其他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

13) 중국은 국가안전 및 공공이익 보호,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 생태환경 유지, 국제협정상 의무이행의 관점에서 수입금지품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금지품목은 다음과 같다. 미가공 사람의 모발, 무기류, 탄약 및 폭발물, 위조화폐 및 유기증권,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초 등 중독성 및 신경약물, 유해한 동식물 및 동 제품, 전염 발생지역의 물질 및 질병으로 전염 가능한 식품 및 약품, 화학공업 폐기물, 폐건전지 등이다. 또한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에서 중고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브라운관용 유리, 증기보일러 및 관련부품, 버너, 중고 모니터, 중고 열전자관, 중고차(견인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량) 및 중고 부품, 중고 오토바이(배기량 50cc 초과), 중고 자전거, 유모차, 중고 의료기기, 전자게임기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다.

한이 필요한 경우

- ⑤ 수출대상 국가나 지역의 시장물량의 한계로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⑥ 수출경영질서가 심각하게 혼란하여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⑦ 국내 특정산업의 육성 또는 육성의 가속화를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⑧ 어떠한 형태의 농업, 목축업, 어업 제품이든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⑨ 국가의 국제금융에서의 위상과 국제수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⑩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해야 할 기타 경우

⑪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 제한이 필요한 기타 경우

또한 국가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 쿼터¹⁴⁾, 허가증 등 방식을 실시하여 관리한다.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해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며, 쿼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 기술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동 부처와 국무원 관련부처의 허가를 받은 뒤에야 수입이나 수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는 통일적인 상품합격평가제도를 실시하며,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상품에 대해 인증, 검사, 검역을 실시하며, 수출입상품에 대해 원산지관리를 한다¹⁵⁾.

4) 허가증 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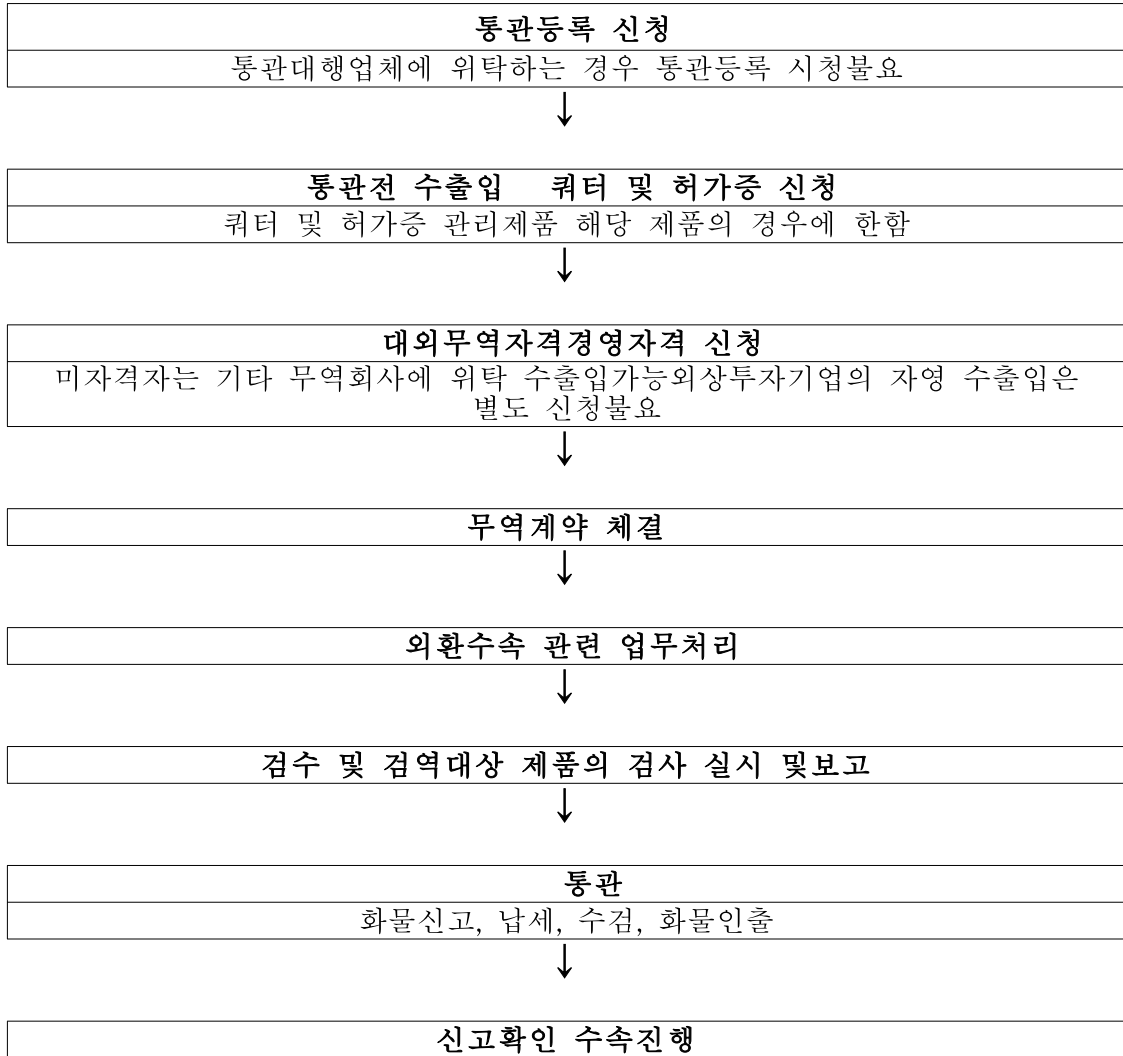
수출입허가제도는 국가의 법률, 정책, 대외무역계획과 국내시장의 수요에 의해 수출입경영권, 경영범위, 교역국가별 정책, 수출입상품 품명, 수량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관리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주로 수출입경영권과 경영범위의 심사비준, 수출입제한상품의 쿼터관리 및 허가증 관리, 수출입 상품의 분류관리, 대외무

14) 일부 상품에 대해 관세쿼터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입상품의 쿼터, 관세쿼터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공정·공개·공평 및 효율의 경쟁의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中 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제19조 내지 20조.

15)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第二十一条 国家实行统一的商品合格评定制度, 根据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对进出口商品进行认证、检验、检疫。第二十二条 国家对进出口货物进行原产地管理。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역국가별 정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림Ⅲ-1> 대중국 수출입 흐름도



자료: KOTRA, 「중국 국가정보(수입규제제도)」, 2013

중국기업이 대외적으로 수출입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다. 허가증 관리제도는 기업은 대외무역을 경영하기 전에 우선 국가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허가를 받고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해야 하는 제도이다.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업무를 취급하는 대외무역경영업체는 다음 각항내용의 조건들을 구비해야 해야 한다. 자신의 상호와 기업 명칭과 조직기구,

명확한 대외무역경영범위, 대외무역업무 경영에 필요한 장소와 자금 및 전문적인 인력, 과거 위타 수출입실적이 규정에 달하거나 필요한 수출입재원 혹은 타회사를 통한 수출입 공급원, 법률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 조건 등이다.

기업은 상무부의 비준을 취득한 후 전국 범위의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성(省) 또는 기타 지방의 기업은 상무부(상무부처)문의 비준을 취득할 경우 현지에서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수출입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지만 경영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국가의 수출입제한상품과 분류관리 상품을 제외한다.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기업은 주요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상무부 소속의 각종 수출입총공사 및 그 지점, 국무원 각부·위 소속의 공업무역회사, 성급·시·자치구 소속의 각종 수출입회사, 외상투자기업, 자영수출입경영자격이 있는 생산기업, 제조기업, 임대수출입회사, 상무부가 대외무역과 수출입업무를 경영자격이 있는 권한을 비준한 회사와 공사 등이다¹⁶⁾.

5) 국제 서비스 무역

중국은 국제서비스분야에서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서 한 약속에 의해 조약체결 상대방이나 참가국에게 시장진입을 허락하거나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¹⁷⁾, 다음과 같은 경우 국제서비스무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¹⁸⁾.

①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공중도덕의 수호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② 인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16)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 156~158.

17) 中 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第二十四条 中华人民共和国在国际服务贸易方面根据所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中所作的承诺, 给予其他缔约方、参加方市场准入和国民待遇。

18)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第二十六条 国家基于下列原因, 可以限制或者禁止有关的国际服务贸易: (一) 为维护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或者公共道德, 需要限制或者禁止的; (二) 为保护人的健康或者安全, 保护动物、植物的生命或者健康, 保护环境, 需要限制或者禁止的; (三) 为建立或者加快建立国内特定服务产业, 需要限制的; (四) 为保障国家外汇收支平衡, 需要限制的; (五) 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 其他需要限制或者禁止的; (六) 根据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的规定, 其他需要限制或者禁止的。

③ 국내 특정 서비스산업의 육성 또는 육성의 가속화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④ 국가의 외환수지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기타 경우

⑥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근거해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기타 경우

또한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처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와 함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제서비스무역 시장진출 허가리스트를 제정, 조정 및 공표한다¹⁹⁾.

6) 대외무역질서

대외무역활동과정에 반독점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대외무역활동에서 독점행위로 시장의 공평한 경쟁에 피해를 줄 경우 반독점법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앞 조항의 위법행위가 있고 대외무역질서에 피해를 줄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²⁰⁾.

또한 대외무역활동과정에 부정당한 저가로 상품판매, 내통하여 응찰, 허위광고 발표, 상업적인 수뢰 등 부정당한 경쟁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대외무역활동과정에 부정당한 경쟁행위가 있을 경우, 반부정당경쟁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²¹⁾.

그리고 대외무역과정에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²²⁾.

19) 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第二十八条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 依照本法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制定、调整并公布国际服务贸易市场准入目录。

20) 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第三十二条 在对外贸易经营活动中, 不得违反有关反垄断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施垄断行为。在对外贸易经营活动中实施垄断行为, 危害市场公平竞争的, 依照有关反垄断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有前款违法行为, 并危害对外贸易秩序的,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可以采取必要的措施消除危害。

21) 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第三十三条 在对外贸易经营活动中, 不得实施以不正当的低价销售商品、串通投标、发布虚假广告、进行商业贿赂等不正当竞争行为。在对外贸易经营活动中实施不正当竞争行为的, 依照有关反不正当竞争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

22) 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第三十四条 在对外贸易活动中, 不得有下列行为: (一) 伪造、变造进出口货物原产地标记, 伪造、变造或者买卖进出口货物原产地证书、进出口许可证、进出口配额证明或者其他进出口证明文件; (二) 骗取出口退税; (三) 走私; (四) 逃避法律、行政法规规定的认证、检验、检疫; (五) 违反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行为。

- ① 수출입 원산지표기의 위조·변조, 원산지 증명서, 수출입 허가증과 쿼터증명 또는 기타 수출입증명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매매
- ② 수출환급세 사취
- ③ 밀수
- ④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인증, 검사, 검역 회피
- 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2. 관세법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과거 제국주의 시절 외국인에 의해 관리되던 반 식민지적 해관업무의 독립을 위하여, 해관총서를 설립하고 1951년 5월 중국해관업무의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잠정 해관법」을 공포하고 실시하였다. 이후 개혁·개방정책에 입각하여 1987년 7월부터는 촉진 위주의 공작방침에 따라 「중화인민 공화국 해관법」을 공포하고 시행하였으며, 2005년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통하여 구해관법의 총 61개 조문에서 102개 조문으로 대폭 확대·개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을 공포하여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²³⁾.

중국의 관세법령은 주요 「중화인민 공화국 해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등 30여 개의 행정법규와 120여 개의 해관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국가세수를 보장하고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 2009년에 해관 세수보전과 강제조치 「중화인민공화국 관세 세수보전과 강제조치법」을 공포하며 해관 규정한 법치에 의거하여 행정을 "촉진위조"의 방침과 병행 관철해 나가고 있다.

중국해관법에 의거하여 대외개방항구와 해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해관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물류 및 화물은 반드시 해관 설립지에서 수출입 하여야 한다.

23) 해관법의 제정목적은 중국의 WTO가입 따른 선진 해관법 체계 확립 및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정비, 밀수, 부정무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및 위법 행위 사전 예방, 수출입물류 화물에 대한 해관 차원의 자원행정과 EDI 체계로의 해관수출입 신고의 법적인 장치 확보, 지적재산권, 수출입화물이 사후심사제도에 대한 법조문의 신규 제정, 해관직원과 업무 종사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명문화 등을 들 수 있다.

해관 감독 관리는 해관법을 이용해서 법률적인 근거로 중국 해관이 출입국 운송수단, 화물 및 물품을 감독 관리하며 세금을 징수한다.

출입국 운송수단(제2장), 출입국 화물(제3장), 출입국 물품(제4장), 관세(제5장), 해관사무 담보(제6장), 법률집행 감독(제7장), 법률책임(제8장) 등 총 9장 102조 구성된다.

해관법에서 해관의 4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수출입 운송수단·화물·여행물품·우편물과 기타물품의 통관 감독관리, 관세, 기타 세금 및 비용징수, 밀수 단속, 해관통계의 집계 및 기타 해관업무를 처리한다.

1) 중국의 해관법규(관세법규)개요

1951년 5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을 공포하여 36년 동안 시행되었지만 1987년 7월 1일부터 개혁개방정책의 시행하며 대외개방과 경제발전 부응하도록 선진국의 관세법을 도입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²⁴⁾(1985년 3월 10일부터 실시, 1987년 10월 15일 상당부분 수정한 후 92년 4월 1일 재차 수정함)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 1993년 4월 1일 수정함),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지적재산권 보호조례(1994년 제정,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의 법규를 공포하여 관세행정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해관법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고 세관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대외경제무역과 과학문화의 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하기 특별히 이 법을 제정했다.²⁵⁾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은 주요 다음과 5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선진 해관법 체계 확립과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정비, 밀수, 부정무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및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 수출입 물류화물에 대한 세관 차원의 지원행정과 EDI 체제로의 세관수출입 신고의 법적인 장치를 확보하며 지적재산권, 상품분류, 수출입화물의

24) 수출입관세조례(2003년 11월 23일), 국무원령 제392호, 총6장 67개조로 구성됨.

25) 中 人民共和国海关法(2000. 7. 8), 第一条 为了维护国家的主权和利益, 加强海关监督管理, 促进对外经济贸易和科技文化交往, 保障社会主义现代化建设, 特制定本法。

사후심사제도에 대한 법조문의 신규제도, 세관직원과 세관 관련 업무 종사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명문화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을 개정하였다²⁶⁾.

2) 과세요건 및 결정

중국의 해관법과 수출입관세조례에서는 각각 “수출입을 허가한 화물, 반출입을 허가한 물품은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관세를 징수한다”²⁷⁾.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입을 승인한 화물과 국경유입 물품은 법률 및 행정법규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관세를 징수한다²⁸⁾”고 하여 수출입관세를 병행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최혜국세율·협정세율·특혜세율·일반세율·쿼터관세세율 등의 세율로 구분한다. 수입화물에 대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관세에는 수출세율을 적용하며, 수출화물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임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중국의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당해 화물의 거래가격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확정한다. 만약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은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화물의 단가, 화물의 중국의 수입지점에서 선적·하역 전의 운수 및 관련 비용,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결국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가 된다. 수출화물의 과세가격은 화물의 단가, 화물을 중국 국내의 수출지점에서 적재하기 전의 운수 및 관련 비용, 보험료를 포함한다. 그 중 포함한 수출관세세액은 마땅히 공제하여야 한다. 입출국물품의 과세가격은 해관법에 의거하여 확정한다³⁰⁾.

26) 강진욱·이선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12권 1호, 2011. 2. 28. pp.88-89.

27) 해관법 제53조. 第五十三 准许进出口的货物、进出境物品, 由海关依法征收关税。

28)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제2조 中华人民共和国准许进出口的货物、进出境物品, 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 海关依照本条例规定征收进出口关税。

29)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제9조, 海关对检举或者协助查获违反本条例行为的单位和个人, 应当按照规定给予奖励, 并负责保密。

30) 해관법 제55조. 第五十五条 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由海关以该货物的成交价格为基础审查确定。成交价格不能确定时, 完税价格由海关依法估定。 进口货物的完税价格包括货物的货价、货物运抵中华人民共和国境内输入地点起卸前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 出口货物的完税价格包括货物的货价、货物运至中华人民共和国境内输出地点装货前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 但是其中包含的出口关税税额, 应当予以扣除。进出境物品的完税价格, 由海关依法确定。

또한 중국의 수출입조례 제 21조에서는 수입화물의 거래 가격이 본 조례 제 18조 제3항³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관이 관련 정황을 참작하여 납세의무자와 가격을 절충한 후 순서에 따라 아래의 가격으로 해당 화물의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①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된 같은 화물의 거래가격, ②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된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 ③ 해당 화물의 수입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해당 수입화물·서로 같은 화물이나 유사한 화물이 일급 판매처에서 특수 관계가 아닌 구매자에게 최대로 판매한 총량의 판매 단위가격, 그러나 본 조례 제 22조³²⁾에 규정된 항목은 제외, ④ 해당 화물의 생산에 사용된 부품원가와 가공비용,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되는 동급이나 같은 종류의 화물의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비용, 해당 화물이 국내 수입지점에 운송되어 하역하기 전의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의 각 항목 총계에 따라 계산된 가격, ⑤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가격. 납세의무자는 세관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지만 전항 ③과 ④항의 순서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임차방식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세관이 심사 확정된 해당 화물의 임대료를 과세가격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1회성 세금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본 조례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추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혹은 세관이 심사 확정된 임대료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다³³⁾.

국외로 운송되어 가공되는 화물은 국경 통과 시 미리 세관에 보고하고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다시 국내로 재 수출되어 오는 것은 국외 가공비와 부품비 및 국내에 재수출되어 오는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해야 하

31) 구매자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 화물 수입 후에 판매전환·처분·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얻어서는 안 되며 수익이 있다 해도 본조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을 것(方不得从买方直接或者间接获得因该货物进口后转售、处置或者使用而产生的任何收益, 或者虽有收益但能够按照本条例第十九条、第二十条的规定进行调整)

32) 수출입관세조례 제22조 내지 제21조 (3)항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추정할 때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동급 혹은 동 종류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내 일급판매처에서 판매 할 때의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비용 및 통상적인 지급 수수료, (2) 수입화물을 국내 수입지점에 운송하여 하역한 후의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 (3) 수입관세 및 국내세수

33)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제23조, 以租赁方式进口的货物, 以海关审查确定的该货物的租金作为完税价格. 纳税义务人要求一次性缴纳税款的, 纳税义务人可以选择按照本条例第二十一条的规定估定完税价格, 或者按照海关审查确定的租金总额作为完税价格.

며, 국외로 운송되어 수리하는 기계류·운수관련 용구나 기타 화물은 국경을 통과 할 때 미리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국외 수리비와 부품비를 심의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한다³⁴⁾.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세관이 정확을 참작하여 납세의 무자와 가격 협의를 한 후 순서에 따라 아래의 가격으로 해당 화물의 과세가격을 추정한다³⁵⁾.

①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된 동일한 화물의 거래가격, ②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된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 ③ 다음 예의 각 항 총계에 따라 계산된 가격 : 국내 생산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 화물의 부품원가와 가공비용, 통상의 이윤과 일반비용, 국내에서 발생한 운송관련비용 및 보험료, ④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가격

수출입관세조례 규정에 따라 계산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는 과세가격의 원가·비용·세금 징수는 객관적이며 계량화 할 수 있는 수치를 근거로 해야 한다³⁶⁾.

3) 납세의무자

중국의 해관법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화물의 수하인”, “수출화물의 적송인”, “입출국 물품의 소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⁷⁾. 이는 한국 관세법과 마찬가지로인데 중국에서는 수출화물에도 수출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수출화물 적송인이 포

34) 수출입관세조례 (中 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제24조 내지 제25조, 第二十四条, 运往境外加工的货物, 出境时已向海关报明并在海关规定的期限内复运进境的, 应当以境外加工费和料件费以及复运进境的运输及其相关费用和保险费审查确定完税价格。第二十五条, 运往境外修理的机械器具、运输工具或者其他货物, 出境时已向海关报明并在海关规定的期限内复运进境的, 应当以境外修理费和料件费审查确定完税价格。

35)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제27조, 第二十七条 出口货物成交价格不能确定的, 海关经了解有关情况, 并与纳税义务人进行价格磋商后, 依次以下列价格估定该货物的完税价格: (一) 与该货物同时或者大约同时向同一国家或者地区出口的相同货物的成交价格; (二) 与该货物同时或者大约同时向同一国家或者地区出口的类似货物的成交价格; (三) 按照下列各项总和计算的价格: 境内生产相同或者类似货物的料件成本(、加工费, 通常的利润和一般费用, 境内发生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 (四) 以合理方法估定的价格。

36)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제28조, 第二十八条按照本条例规定计入或者不计入完税价格的成本、费用、税金, 应当以客观、可量化的数据为依据。

37) 해관법 제54조. 第五十四条 进口货物的收货人、出口货物的发货人、进出境物品的所有人, 是关税的纳税义务人。

함되어 있다.

관세의 납기는 수입화물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운송기구의 국내 입항 일부터 14일 이내 신고하고 수출화물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화물이 세관의 감독구역에 도착한 후 적재되기 24시간 이내 화물수출입지역 세관에서 신고해야 하며, 그러나 특별히 세관이 허가한 것을 제외한다. 세관을 경유할 때 운송되는 수출입화물은 해관총서의 규정한 해관법과 수출입 관세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수입화물의 도착 전에 납세의무자는 세관의 승인을 거쳐 신고를 먼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³⁸⁾.

그리고 세관은 세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수출입화물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세관이 연체금을 징수한다. 납세의무인·담보인이 3개월이 초과해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속 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장의 비준을 거쳐 세관은 강제 조치를 실시³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⁰⁾. 세관은 강제 조치를 실행할 경우 납세의무자·담보인이 납입하지 않는 연체금을 동시에 강제 집행한다. 출입국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통관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인이 규정된 납세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화물 및 기타 재산을 뚜렷하게 이전·은닉한 현상이 있을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납세의무인이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직속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하는 산하 세관장의 비준을 거쳐 세관은 다음의 세수 보전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38) 수출입관세조례(中 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제29조, 第二十九条 进口货物的纳税义务人应当自运输工具申报进境之日起14日内, 出口货物的纳税义务人除海关特准的外, 应当在货物运抵海关监管区后、装货的24小时以前, 向货物的进出境地海关申报。进出口货物转关运输的, 按照海关总署的规定执行。进口货物到达前, 纳税义务人经海关核准可以先行申报。具体办法由海关总署另行规定。

39) ①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기타 금융기구의 예금 중 세금을 공제한다, ②마땅히 납세하여야 하는 화물을 법에 의거하여 매각하고 매각소득액으로 세금을 공제한다, ③압류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그 가치가 응납세액에 상당하는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소득으로 세액을 공제한다.
(一) 书面通知其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从其存款中扣缴税款;(二) 将应税货物依法变卖, 以变卖所得抵缴税款;(三) 扣留并依法变卖其价值相当于应纳税款的货物或者其他财产, 以变卖所得抵缴税款。

40) 해관법 제60조, 第六十条 进出口货物的纳税义务人, 应当自海关填发税款缴款书之日起十五日内缴纳税款; 逾期缴纳的, 由海关征收滞纳金。纳税义务人、担保人超过三个月仍未缴纳的, 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 海关可以采取下列强制措施: (1) 书面通知其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 从其存款中扣缴税款;(2) 将应税货物依法变卖, 以变卖所得抵缴 税款;(3) 扣留并依法变卖其价值相当于应纳税 款的货物或者其他财产, 以变卖所得抵 缴税款。海关采取强制措施时, 对前款所列纳税义务人、担保人未缴纳的滞纳金同时强制执行。进出境物品的纳税义务人, 应当在物品放行前缴纳税款。

① 납세의무인이 계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납세인에게 지급하는 응답세액에 상당하는 예금의 잠정적인 지급 정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납세의무인의 가치가 응답세액에 상당하는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한다.

납세의무인이 규정된 납세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관은 반드시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직속 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장의 비준을 거쳐 세관은 서면으로 납세의무인이 계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잠시 지급을 정지하였던 예금 중 세금을 공제하거나 또는 법에 의거하여 압류한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소득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채택한 세수보전조치가 부당하거나 납세의무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세관이 여전히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세관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⁴¹⁾.

또한 수출입화물을 통관시킨 후 세관이 세금을 적게 징수하였거나 징수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면 마땅히 세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화물·물품을 통관시킨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납세의무인에게 추가 징수한다. 납세의무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적게 징수되거나 누락된 경우 세관은 3년 이내에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반면, 세관이 과다 징수한 세금은 세관은 이를 발견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인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⁴²⁾.

가산금제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세금 납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

41) 제61조. 第六十一 进出口货物的纳税义务人在规定的纳税期限内有明显的转移、藏匿其应税货物以及其他财产迹象的, 海关可以责令纳税义务人提供担保; 纳税义务人不能提供纳税担保的, 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 海关可以采取下列税收保全措施: 1. 书面通知纳税义务人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暂停支付纳税义务人相当于应纳税款的存款; 2. 扣留纳税义务人价值相当于应纳税款的货物或者其他财产。纳税义务人在规定的纳税期限内缴纳税款的, 海关必须立即解除税收保全措施; 期限届满仍未缴纳税款的, 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 海关可以书面通知纳税义务人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从其暂停支付的存款中扣缴税款, 或者依法变卖所扣留的货物或者其他财产, 以变卖所得抵缴税款。采取税收保全措施不当, 或者纳税义务人在规定期限内已缴纳税款, 海关未立即解除税收保全措施, 致使纳税义务人的合法权益受到损失的, 海关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42) 해관법 제62조 내지 제63조. 第六十二条 进出口货物、进出境物品放行后, 海关发现少征或者漏征税款, 应当自缴纳税款或者货物、物品放行之日起一年内, 向纳税义务人补征。因纳税义务人违反规定而造成的少征或者漏征, 海关在三年以内可以追征。第六十三条 海关多征的税款, 海关发现后应当立即退还; 纳税义务人自缴纳税款之日起一年内, 可以要求海关退还。

일 내에 지정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일부터 일수에 따라 체납세액의 5/10,000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세관의 관세·체납금 징수 등은 납입 증빙서를 제정 발표해야 하며 납입증빙 양식은 해관총서가 규정한다.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체납세금 상황에 대한 공고를 할 수 있다. 세관의 관세 체납금 징수등 납입 증빙서를 제정 발표해야 하며 납입증명 양식은 해관총서가 규정한다⁴³⁾.

중국 세관의 관세·체납금 징수 등은 인민폐로 계산하고 징수한다. 수출입화물의 거래 가격 및 관련 비용은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기준 환율로 환산하여 외화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기준환율 화폐종류 이외의 외화로 가격을 계산할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민폐로 과세가격을 계산한다. 환율 적용일은 세관이 해당 화물의 세율을 적용한 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출입화물의 가격 및 관련 비용 등이 외화로 계산되며, 이를 인민폐로 환산한다. 과세가격은 사사오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⁴⁴⁾ 세관이 매월 적용 환율은 전월 셋째 주 수요일(셋째 주 수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넷째 주 수요일)에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이 공표한 외환 기준율로 사용한다. 그리고 외환 기준율이 없는 경우 동일한 시각에 중국은행이 공표한 현찰 매입가와 현찰 매출가의 중간 수치(인민폐의 소수 넷째자리까지 사사오입)로 대신하여 계산한다. 만약 위에서 말한 환율에 큰 변동이 있고 세관총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적용 환율을 정하고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⁴⁵⁾.

또한 납세의무자가 불가항력이나 국가의 세수정책 조정상황 때문에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해관총서의 승인을 받아 세금납부 기한을 연기⁴⁶⁾할

43) 수출입관세조례(中 人民共和國進出口關稅條例), 제37조, 第三十七條 納稅義務人應當自海關填發稅款繳款書之日起15日內向指定銀行繳納稅款。納稅義務人未按期繳納稅款的, 從滯納稅款之日起, 按日加收滯納稅款萬分之五的滯納金。海關可以對納稅義務人欠繳稅款的情況予以公告。海關徵收關稅、滯納金等, 應當制發繳款憑證, 繳款憑證格式由海關總署規定。

44) 중국 화폐단위의 분(分) 단위까지(위엔, 각, 분)

45)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關稅條例), 제38조,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貨物徵稅管理辦法(제124호)“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貨物徵稅管理辦法)” 제16조.

46) 직속 세관은 납세자의 세금납부 연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황의 사실 여부를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사실로 확인된 경우 관련 신청 자료를 세관총서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세관총서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금 납부 연기에 대한 동의 여부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기한 등을 결정하여 신청 자료를 송부한 직속 세관에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2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10일 연장할 수 있다(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貨物徵稅管理辦法)” 제25조.

수 있지만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⁴⁷⁾. 납세자가 세금 납부 연기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 납부 연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세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1일 당 0.05%의 체납금을 가산한다⁴⁸⁾.

4) 관세감면 및 환급

중국의 해관법에서도 아래에 열거한 수출입화물 및 국경출입물품은 관세를 감세하거나 면세하는 규정이 있다. ①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품과 견본물품, ② 외국정부·국제조직이 무상으로 기증한 물자, ③ 세관통관 전에 손괴를 당하거나 또는 손괴된 화물, ④ 규정 수량이나 금액 이내의 물품, ⑤ 법률로 관세징수의 감세나 면세⁴⁹⁾를 규정한 기타 화물·물품, ⑥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이 관세의 감세나 면세를 규정한 화물·물품⁵⁰⁾ 등이 있다.

또한 국무원은 특정감세 또는 면세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한다. 특정지역 및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의 수출입화물은 관세를 감세하거나 면세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 또는 감세하여 수입한 화물은 단지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로 사용하고 세관의 심사 및 승인을 거치거나 또는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⁵¹⁾.

47) 수출입관세조례 (中 人民共和國進出口稅則條例), 제39조,第三十九條 納稅義務人因不可抗力或者在國家稅收政策調整的情形下, 不能按期繳納稅款的, 經海關總署批准, 可以延期繳納稅款, 但是最長不得超過6個月。

4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貨物徵稅管理辦法) 제26조. 第二十六條 經海關總署審核未批准延期繳納稅款的, 直屬海關應當自接到海關總署未批准延期繳納稅款的決定之日起3個工作日內通知納稅義務人, 並填發稅款繳款書。納稅義務人應當自海關填發稅款繳款書之日起15日內向指定銀行繳納稅款。逾期繳納稅款的, 海關應當自繳款期限屆滿之日起至繳清稅款之日止, 按日加收滯納稅款萬分之五的滯納金。

49) 아래의 수출입 화물은 관세를 면제한다(수출입관세조례 제45조)
① 관세 세액이 1종류로서 인민폐 50위엔 이하의 화물, ②상업가치가 없는 광고제품과 견본품, ③ 외국정부·국제기구가 무상으로 증여한 물자, ④세관의 통관허가 전에 손실을 입은 화물, ⑤국경 진 출입 운송기구에 적재하는 도중에 필요한 연료·자재와 식음료 용품. 세관의 통관허가 전에 손실을 입은 화물은 세관이 인정하는 손실정도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기타 면세 혹은 관세가 감면되는 화물은 세관이 규정에 따라 면세나 관세감면을 한다.

50) 해관법 제56조. 第五十六條 下列進出口貨物、進出境物品, 減征或者免稅: 1. 無商業價值的廣告品和貨樣; 2. 外國政府、國際組織無償贈送的物資; 3. 在海關放行前遭受損壞或者損失的 貨物; 4. 規定數額以內的物品; 5. 法律規定減征、免稅的其他貨物、物品; 6. 中華人民共和國締結或者參加的國際條約確定減征、免稅的貨物、物品。

51) 해관법 제57조. 第五十七條 特定地區、特定企業或者有特定用途的進出口貨物, 可以減征或者免稅。特定減稅或者免稅的範圍和辦法由國務院規定。依照前款規定減征或者免稅 進口的貨物, 只能用於特定地區、特定企業或者有特定用途, 未經海關核准並補繳稅款, 不得移作他用。

그리고 세관승인을 일시 수입하거나 또는 일시 수출한 화물 및 특별히 수입을 허가한 보세화물은 화물가 세금을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에 잠시 관세납부 일시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⁵²⁾

한편, 수출입관세조례에서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수출입화물이 수출입일로부터 1년 내에 국경으로 다시 운송되어 나가는 것은 수출입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⁵³⁾ 파손·부족·품질불량이나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운송업자나 보험회사가 무료 보상이나 교환하는 같은 화물은 수출입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무료로 교환되는 원래의 수입화물이 국경유출시 운송 불량이나 원래의 수출화물이 국경유입 시 운송 불량인 것은 세관이 원래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다시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한다⁵⁴⁾.

특정지역·특정기업이나 특정한 용도가 있는 수출입화물의 면세 혹은 관세감면 및 임시 감면이나 면세하는 관세는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수입 화물의 면세 혹은 감면은 수입중심세관이 대리하여 징수하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⁵⁵⁾.

수출입화물 통관허가 후 세관이 세금을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이 발견되면 세금납부나 화물통관 일로부터 1년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세금을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된 것은 세관이 세금납부나 화물 통관 일로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세금납부나 화물 통관 일로부터 적게 징수되거나 누락된 세금은 일수에 따라 5/10,000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세관이 세관의 화물 관리감독에서 발견한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세금이 적게 징수되거나 누락시킨 것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일로부터 3년 내에 세금

52) 제59조. 第五十九 经海关批准暂时进口或者暂时出口的货物, 以及特准进口的保税货物, 在货物收发货人向海关缴纳相当于税款的保证金或者提供担保后, 准予暂时免纳关税。

53)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제43조, 第四十三条 因品质或者规格原因, 出口货物自出口之日起1年内原状复运进境的, 不征收进口关税。因品质或者规格原因, 进口货物自进口之日起1年内原状复运出境的, 不征收出口关税。

54)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제44조, 第四十四条 因残损、短少、品质不良或者规格不符原因, 由进出口货物的发货人、承运人或者保险公司免费补偿或者更换的相同货物, 进出口时不征收关税。被免费更换的原进口货物不退运出境或者原出口货物不退运进境的, 海关应当对原进出口货物重新按照规定征收关税。

55)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제46조 내지 제47조, 第四十六条 特定地区、特定企业或者有特定用途的进出口货物减征或者免征关税, 以及临时减征或者免征关税, 按照国务院的有关规定执行。第四十七条 进口货物减征或者免征进口环节海关代征税, 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을 추정해야 되며 납세의무 일부터 일수에 따라 적게 내거나 누락된 세금 5/10,000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가산해서 추정해야한다⁵⁶⁾.

관세환급에서 가공무역 수입부품이 국가가 규정한 보세 수입인 것으로 해당 완제품 제작이나 수입부품이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되지 않은 것은 세관이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한다. 가공무역의 수입부품이 국경을 넘어올 때 국가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당 완제품이나 수입부품이 규정된 시간 내에 수출되는 것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경통과 시 이미 징수한 관세 대금을 환불한다⁵⁷⁾.

또한 세관이 발견한 과다납부된 세금은 납세의무자에게 반환수속을 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된 세금을 발견한 것은 세금납부 일로부터 1년 내에 과다 납부된 세금과 같은 기간 은행 일반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⁵⁸⁾할 수 있고 세관은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하며 납세의무자에게 반환수속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된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⁵⁹⁾. 세금과 관련이자의 반환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관련 국고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⁶⁰⁾.

그리고 세금을 이미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이상으로 인하여 원상태로 반송 반출되는 경우, 세금을 이미 납부한 수출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이상

56) 수출입관세조례 (中 人民共和國進出口稅則條例), 제51조, 第五十一條 進出口貨物放行後, 海關發現少征或者漏征稅款的, 應當自繳納稅款或者貨物放行之日起1年內, 向納稅義務人補征稅款。但因納稅義務人違反規定造成少征或者漏征稅款的, 海關可以自繳納稅款或者貨物放行之日起3年內追征稅款, 並從繳納稅款或者貨物放行之日起按日加收少征或者漏征稅款萬分之五的滯納金。海關發現海關監管貨物因納稅義務人違反規定造成少征或者漏征稅款的, 應當自納稅義務人應繳納稅款之日起3年內追征稅款, 並從應繳納稅款之日起按日加收少征或者漏征稅款萬分之五的滯納金。

57)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稅則條例) 제41조, 第四十一條 加工貿易的進口料件按照國家規定保稅進口的, 其制成品或者進口料件未在規定的期限內出口的, 海關按照規定征收進口稅。加工貿易的進口料件進境時按照國家規定征收進口稅的, 其制成品或者進口料件在規定的期限內出口的, 海關按照有關規定退還進境時已征收的稅款。

58) 납세자가 세관에 세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 반환 신청서》 1(양식은 첨부문서3 참조); (2) 원래 세금 고지서 및 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타 자료.“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貨物徵稅管理辦法)” 제60조.

59)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稅則條例), 제52조, 第五十二條 海關發現多征稅款的, 應當立即通知納稅義務人辦理退還手續。納稅義務人發現多繳稅款的, 自繳納稅款之日起1年內, 可以以書面形式要求海關退還多繳的稅款並加算銀行同期活期存款利息; 海關應當自受理退稅申請之日起30日內查實並通知納稅義務人辦理退還手續。納稅義務人應當自收到通知之日起3個月內辦理有關退稅手續。

60)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稅則條例), 제53조, 第五十三條 按照本條例第五十條、第五十二條的規定退還稅款、利息涉及從國庫中退庫的, 按照法律、行政法規有關國庫管理的規定執行。

으로 인하여 원상태로 반송 반입되고 수출 및 반송으로 인한 국내의 관련 세금을 재납부한 경우, 수출관세를 이미 납부한 화물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후 수출되지 못하고 수출의 철회를 신청한 경우, 납세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세금의 반환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개별 포장되어 수출입되는 화물이 수량부족 사고가 발생하고 이미 해당 화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된 경우 만일 해당 화물의 발송인·운송인·보험사가 이미 사고 발생 부분에 대하여 반송하거나 또는 상응하는 가격을 배상한 경우, 수출입 화물이 결손·품질불량·규격 부적합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또는 본 방법 또는 수량부족 사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운송인·보험사가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한 경우⁶¹⁾, 납세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배상금액에 상응하는 세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세관에게 세금 반환 신청을 제출하며 세관은 이에 대한 심사 확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세관이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을 세금 반환 신청의 수리일로 본다⁶²⁾.

5) 관세율

중국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다⁶³⁾.

중국에서 자국경제와 국민경제에 꼭 필요하고 생산불가능한 수입품에 대한 저관세율을 적용하거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법규를 적요한다. 국내에서 생산을 불가능한 수입품 또한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계설비와 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의 관세율은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한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하고 자국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제품은 관세율을 보다 높게 책정한다.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순서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출

61)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貨物徵稅管理辦法) 제61조 내지 제65조,

62) 제67조 세관은 세금 반환 수속 시에 수입 반환서(양식은 첨부문서4 참조)를 작성하여 발행하고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본 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한 세금에 대한 이자를 동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 이자는 세관이 수입 반환서를 작성 발행한 날 중국 런민은행(人民銀行)의 일반 저축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반환 이자의 계산 기한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세관이 수입 반환서를 작성한 날까지로 한다. ②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가 이미 공제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반환하지 않으나 국가가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이미 납부한 체납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63) 관세무역연구회, 「중국의 관세 및 통관환경」, 중국관세무역신보, 2012. 1호

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부분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 관세를 면제하지만,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한 상품과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원자재, 반제품 등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한다⁶⁴⁾.

중국의 관세는 WTO 가입 전에는 우대관세율과 일반관세율 두 가지뿐이었으나, 가입 후에 최혜국대우 원칙을 토대로 우대세율을 세분화하여 최혜국세율(MFN세율), 협정세율(FTA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기본세율), 잠정세율, 관세할당세율(TRQ세율), IT상품세율 등 7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혜국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제 10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하고, 협정세율은 세칙 제 10조에 규정한 중국과 특정 국가, 국제기구와의 조약 또는 협정을 맺은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특혜세율은 세칙 제 10조에서 규정한 중국과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하며, 보통세율은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상기 우대세율과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하고 상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수입관세의 부과 순위는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며⁶⁵⁾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그리고 협정세율·특혜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낮은 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수입화물은 잠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세율을 적용한다. 수출관세는 수출세율 및 잠정세율이 2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관세의 부과 순위는 수출화물은 수출세율을 적용하는 것 보다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64) ,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 『해외농업시리즈9: 중국농업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65)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제3장 생물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제75조에 따른 세율

<표 III-2> 중국의 세율의 종류

세율종류	적용범위
최혜국세율 (양허세율)	- 최혜국대우조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WTO 회원국 원산지의 수입화물, 중국과 최혜국대우조항을 포함한 양자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 중국 국경내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
협정세율 (FTA세율)	- 중국과 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FTA체결 국가 원산지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율) - 아세안협정세율(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태협정세율(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칠레협정세율, 파키스탄협정세율, 싱가포르협정세율, 뉴질랜드협정세율, 페루협정세율, 코스타리카협정세율, 홍콩·마카오협정세율
특혜세율	- 중국과 특혜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 - 아·태 2개국(방글라데시, 라오스), 아세안 3개국(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최빈국 37개국
보통세율 (기본세율)	-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과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율
잠정세율	-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세율
관세할당세율 (TRQ세율)	- 수입관세할당 관리를 받는 수입화물의 관세할당 내 물량에 적용하는 세율
IT상품세율	- 정보산업부가 정보산업제품에 사용된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IT상품(완제품이 아닌것)에 적용하는 세율

자료: 중국해관수출입세칙(2012)

중국과 한국 FTA가 타결됐으나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지만 현재는 WTO 협정세율과 기본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WTO가입에 따른 회원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왔다. 수입관세 조정을 통해 2001년 WTO 가입 당시 평균관세율을 15.3%로 대폭적인 관세 인하하였다. 평균 세율은 2001년 15.3%에서 2005년 9.9%로 인하되었고, 2006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현재까지는 9.8%로 인하 평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⁶⁶⁾. 2011년 기준으로 품목별 평균 관세율은 농산물 15.2%, 공산품 8.95%로 유지하고 있다⁶⁷⁾. 과거 1992년부터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WTO가 요구되고 있는 관세 수준을 부합되고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의 해소,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진행하였다. 2012년 기준 평균관세율은 9.8%이며, 그 가운데 농산품 평균세율이 15.1%로 2011년 대

66)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 41~42.

67) 외교통상부, 「분야별 통상환경」, 발간등록번호, 11-1260000-000043-10, 2011. pp.8~9.

비 다소 낮아졌고, 공업품 평균관세율은 8.9%로 2011년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였다⁶⁸⁾.

6) 2013년도 관세실시방안

중국 관세세칙위원회가 2012년 12월 20일 「2013년 관세실시방안」(2013년 1월 1일 발효)에 따르면,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총 784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였다⁶⁹⁾.

관세인하 품목은 화장품, 분유, 조미료 등의 생활용품과 의류용품, 신흥산업 관련 원부자재, 친환경 제품과 일부 방직산업 관련 제품이다. 대상품목의 수입관세율을 2013년 1월 1일부로 최혜국 세율보다 낮게 조정하였다.

다리미,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일부 소형 가전제품과 관련 부품의 수입관세율이 기존에는 최고 35%에 달했으나 2013년부터는 최저 8%까지 낮아지게 되었으며, 자동차용 리튬전지(12 → 6%), 자동차용 공기조절기(20 → 10%), 베어링(6 → 3%), 콘택트렌즈(10 → 6%) 등 중국 수입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의 수입관세율도 낮아져 앞으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국가의 1,875개 세목 상품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세율(APTA)을 실시하고, 에티오피아, 베냉 등 유엔에서 인정한 총 40개 후진국의 일부 세목 상품에 특혜세율을 실시한다.

중국의 수출입 품목은 일부 세칙 세목을 조정하여 2013년판의 세칙 세목 총수는 8,238개이다. 2008년 7,758개, 2009년 7,868개, 2010년 7,923개, 2011년 8,19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2절 수출입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

1. 수출입통관 절차

68) 상해 해관, 「2012년 관세실시방안 해설」, 2012.

6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 43~44.

1) 개요

중국의 화물통관 제도와 정책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관의 관리 감독 화물은 수입화물의 국경 진입부터 세관수속의 종료까지, 수출화물의 세관신고에서 출국까지, 통과·환적·통운하는 화물이 국경 진입에서 출국까지 마땅히 세관의 감독관리를 수용하여야 한다⁷⁰⁾.

중국의 수출입화물의 통관은 중국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부합하며 수출입허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해관검사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은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해관에 수출입 경영권 로그인 등록수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관원 또는 통관기업으로 하여금 통관 업무를 위탁하여 화물의 수출입 통관 절차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수출입 절차 및 보세운송 통관절차에 대한 고찰한다.

일반적 수출입화물의 통관	(1)신고	(2)화물검사	(3)관세징수	(4)통관 및 반출입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의 통관	(1)신고	(2)화물검사	(3)관세징수	(4)통관 및 반출입	(5)통관종료

중국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는 2가지 있다. 일반적 수출입화물의 통관 및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의 통관이다. 일반적으로 통관절차는 신고, 화물검사, 관세징수, 통관 및 반출입 등 4단계가 있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의 통관상의 경우 관세의 감면 또한 추후 납부 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기간 안에 세관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신고, 화물검사, 관세징수, 통관 및 반출입 통관종료 등 5단계의 통관 절차가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체 사용한 기계설비, 물자와 가공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이에 따른 화물수입 절차는 해당 기업 또는 대리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화물수입통관서류(열은남색 서식)’을 작성한 후에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수

70) 해관법, 제23조. 第二十三 进口货物自进境起到办结海关手续止, 出口货物自向海关申报起到出境止, 过境、转运和通运货物自进境起到出境止, 应当接受海关监管。

속을 밟는다. 만약 화물은 감면세 우대정책을 받으면 세관에 발급한 '수입화물 면세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가공무역과 관련된 화물일 경우 관할 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수책'을 제시해야 하며, 허가증이 필요한 화물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투자 자본으로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는 국가 상품검사기구의 자산평가에 통해 수입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상품검사기관이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자산가치 평가통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지 세관이 통관서류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을 허가한다. 만약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화물 면세증명'을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해당 화물에 세관이 '징세'라고 표시를 표명한 화물인 경우에는 수입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 및 증치세를 징수하고 통관을 허가한다.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신청 중인 화물인 경우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먼저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해당 기업은 3개월 기한 내에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보완해서 제출한 후 보증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3개월 기한 내에 면세 증명을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수입관세로 변경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2) 수출입통관신고

수출입통관신고는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의 첫 단계이다. 신고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들이 위탁한 대리인이 수출입허가증과 수입물품 선하증권, 수출물품 선적증명서나 해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세관에 신고하도록 통관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중국의 주요 통관신고방식은 신고방식,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전자 신고 등으로 하고 있다.

3) 화물검사

수출입 화물이 통관신고 절차를 거쳐 화물검사 절차로 진입한다. 이 절차는 중국 국무원이 1997년부터 새로운 세관검사 조례를 공포하여 수출입관련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관검역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관법 제28조 규정⁷¹⁾에 의거하여

71) 28 조(수출입화물의 검사)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세관의 화물검사 시 화주는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또한 화주는 화물의 운반 개봉 및 화물의 채포장의 책임을 진다. 세관이 필요하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세관의 화물검사 시 화주는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또한 화주는 화물의 운반, 개봉 및 화물 재포장의 책임을 진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의로 개봉하여 검사하거나 재검사 또는 견본채취를 할 수 있다. 화주의 신청과 해관총서의 승인을 거쳐 당해 수출입화물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즉 검사면제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화물을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물검사관 해관이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들의 위탁 대리인이 제출된 수출입허가증과 수입물품 선하증권, 수출물품 선적증명서나 해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신고서류와 화물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의 있거나 없거나 경우 및 수출입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말한다.

수출입신고 화물에 대하여 해관이 검사를 결정한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들의 위탁 대리인은 검사 현장에 도착하여 해관의 요구에 따라 화물의 이동 및 개포장 등 화물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⁷²⁾

이 제도의 도입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수출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출입 및 관련 무역기업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무역기업들에 대한 세관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탈세를 막는 것이다.

4) 관세징수

관세징수란 국가의 정책 및 법규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들의 위탁 대리인은 해관에서 발급한 관세 및 검사비용 등을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관세와 수입과징금을 해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해관법과 수출입관세조례에서는 각각 "수출입을 허가한 화물이거나 반출입을 허가한 물품은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관세를 징수한다⁷³⁾".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입을 승인한 화물과 국경유입 물품은 법률 및 행정법규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관세를 징수한다"⁷⁴⁾고 하

인정할 때에는 임의로 개봉하여 검사하거나 재검사 또는 견본채취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화주의 신청과 해관총서의 승인을 거쳐 당해 수출입화물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7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홍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 88.

73) 「해관법」, 제53조. 第五十三 准许进出口的货物、进出境物品, 由海关依法征收关税。

여 수출관세와 수입관세를 병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증치세나 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을 계산하기에 앞서 필요한 항목인 관세의 종료와 수입과징금, 완세가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법세칙은 「해관수출입세칙」에 따라 수출화물을 분류하고 일련번호를 배부하고 적절한 납세금액을 확정한다.

「해관수출입세칙」에 의한 수출세율은 한 종류만 있고, 수입세율은 보통세율과 우대세율 두 가지로 나뉜다. 「해관수출입세칙」 제6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특혜 협의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입 화물에는 보통세율을 적용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특혜 협의를 체결한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입 화물에는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수출화물에는 차별관세를 징수하거나 다른 차별대우를 주는 국가에게 특별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⁷⁵⁾

현재 중국 해관은 다른 부문을 대신하여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주요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수입과징금에는 부가가치세, 소비세와 톤세(tonnage duties) 세 등이 있다. 수입물품의 완세가격은 세관에서 거래가격으로 확정하며 동일 물품이 중국에 수입되는 날부터 하역하기 전에 운송비와 보험료 및 기타 관련 비용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매도인이나 공급자는 중국 국내에 동일 물품을 매각 시 매수인이나 소비자 동일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했거나 또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정한 후의 대금총액을 말한다.

5) 통관 및 반출입

「해관법」 제29조 규정에 근거하면 세관은 검사를 마친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입면장에 서명한 후 해당 화물을 통관시킨다. 화주는 수출입면장을 항구, 공항, 역 또는 우체국 등 운송 부서에 제출하고 상품을 인수하거나 선적하게 된다. 세관은 수입화물의 경우 국내에 들여와서 부터 세관수속을 마

74)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제3조. 第三 国务院制定《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以下简称《税则》)、《中华人民共和国进境物品进口税税率表》(以下简称《进境物品进口税税率表》), 规定关税的税目、税则号列和税率, 作为本条例的组成部分。

75) 「해관수출입세수징수관리법」, 제6조.

칠 때까지, 수출화물의 경우 세관신고부터 선박에 화물이 선적될 때까지, 국제연합운송화물은 국내로 들여와서 부터 국외로 나갈 때까지 관리 감독한다.⁷⁶⁾

수입지 세관의 현장감독 업무의 마지막 단계는 통관이다. 개항지 세관에서 통과된 수출입화물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세관담당자는 서류신고, 화물검사, 관세징수 등의 통관 절차에 대한 업무처리하고 확인 도장을 찍고 수출입화물을 반출시키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보세가공 무역방식의 수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또는 추후납부 수입화물, 임시수출입 화물, 중계운송화물 및 기타 미납세 수입화물의 경우 개항지 세관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고 확인 후에 화물을 통과시키며 수출입화물은 후속관리로 전환된다. 개항지 세관에서 통과된 후속관리대상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규정기한 내 검사확인을 하며 서류보완 및 관세 징수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가공무역방식 수출입화물의 경우, 세관은 가공무역계약 기한 이내 수입 및 재수출 현황과 잔고량 등을 확인하며 내수판매분의 서류보완과 관세 징수 등이 이행된 후 가공무역계약의 통관이 종료된다. 임시 수출입화물의 경우, 규정기한 내 임시 수출입화물의 재수출입 현황 등을 대조하고 관세징수 및 확인 절차가 이행된 후 최종 세관감독이 종료된다.

그리고 특정 감면세 화물은 수입화물의 해관감독기한 만료 후 감독해제 신고를 거쳐 ‘감면세 수입화물의 해관감독 해제증명’의 발행 후 해관감독 업무를 종료한다⁷⁷⁾.

6)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의 통관 절차(통관종료)

가공무역방식의 수입화물은 계약기간 내 수입 및 재고량을 확인해야 하고 내수판매분의 서류보완과 관세 부과 등이 이행된 후 가공무역계약의 통관이 종료된다.

한편, 통관취하란 수출신고화물이 통관수속 후 특별한 이유로 선적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인이 반송을 신고하여 수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통관반송화물은

76) 해관법」 제29조. 第二十九 除海矣特准外, 进出口货物在收发货人缴清税款或者提供担保后, 由海矣签发放行。

7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홍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 89.

반송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감독지역에서 반송한다. 수출세금을 이미 납부한 화물은 납세일로부터 1년 이내 서면신고서 및 납세 영수증에 의해 세관에 반환을 요청한다.

세관의 통과수속 후 운송수단의 선적배치 등의 원인으로 수출화물의 전부 혹은 일부가 선적되지 못한다면 신고인은 "수출화물통관단 변경신청서"를 작성한다. 화물전부를 선적하지 못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거쳐 우선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수출 통관수속을 밟으며 화물 일부를 선적하지 못한 경우 신고 화물의 전부를 통관 반송으로 처리한 후 세로 실제 수출화물 일부의 통관수속을 밟는다.

2. 통관 서류 및 기타 요건

1) 통관 서류

통관 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와 그 외 기본서류, 특수서류 및 예비서류 등 3가지로 분류된다⁷⁸⁾.

수출입화물신고서는 해관감독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서류이다. 즉 수출입화물신고서는 수출입화물의 송하인과 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해관에 화물의 상황을 신고하는 법률문서이며, 중국해관의 현행 신고서는 1996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무역방식별로 양식 색상⁷⁹⁾이 다르다.

일반 수출입화물은 동일 양식의 통관신고서 3부(각각 해관보관용, 해관통계용, 기업보관용)를 작성하며,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통관 등록시스템의 경우, 신고서 1부만 작성하여 등록센터에 제출한다. 전산화 등록시스템의 경우 우선 신고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해관에 제출하는데 이것을 통관신고서 예비입력이라 하며, 수동작업의 통관신고서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위탁가공무역 및 원자재조달 가공무역의 경우, 수입 시에는 통관신고서 4부를 작성하며 기본 3부 외에 제4부는 해관신고 확인용으로 사용한다. 수출 시에는 외

78) 세법연구센터, 「신홍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91-92.

79) 일반무역방식의 통관신고서는 백색, 원자재조달 가공무역의 통관신고서는 분홍색, 가공조립무역의 통관신고서는 옅은 녹색, 외국인투자기업의 통관신고서는 옅은 남색, 수출세금 환급의 통관신고서는 옅은 황색

화 수취가 없으면 4부를 작성하여 제4부는 해관신고 확인용으로 사용하고 외화 수취가 있으면 5부를 작성하여 제5부는 수출외화대금 영수신고 확인용으로 사용한다. 기타 무역방식의 경우, 수입 시에는 외화결제가 없으면 3부를 작성하며 외화결제가 있으면 4부를 작성하여 제4부는 수입외환대금 결제신고 확인용으로 사용한다. 수출 시에는 세금환급 또는 외화수취가 없으면 3부를 작성하여 세금환급 혹은 외화수취가 있으면 4부를 작성하여 제 4부는 수출외화대금 영수신고 확인용으로 사용한다.

과거 수출입회사가 제공한 통관신고 면장과 관련 서류에 의거하여 통관 수속을 진행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IT를 기반으로 한 「China Electronic Port(中國電子口岸)」프로그램을 통하여 신고한 통관 면장 및 첨부서류의 전자 정보에 근거하여 검사 및 화물 통관 수속을 진행하게 되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화물 회사에서 ‘전자지불(Electronic payment)’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페이퍼리스(paperless) 통관’ 진행이 불가능하다.

기본서류는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다.

① INVOICE(운송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② 포장명세서(산적화물(Bulkcargo),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 제외), ③ B/L(해운 수출입의 경우), ④ AWB(항공운송의 경우), ⑤ 소포명세서(우편운송의 경우), ⑥ 화물수취증(육상운송의 경우), ⑦ 수출대금영수 신고 확인증(수출의 경우), ⑧ 해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 증명 및 보세등기 증명서 등이다.

특수서류는 국가의 법률법규에 근거한 특수 관리 증서로서 다음과 같다.

① 쿼터허가증(국가계획부문의 쿼터증명, 상무부 수출입허가증 등), ② 기타 특수서류(기계전자제품수입, 상품검사,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등), ③ 가공무역수책⁸⁰⁾

예비서류는 필요시 해관이 요구하는 서류로서 ① 무역계약서, ② 원산지 증명서, ③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④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이

80) 국가수출 장려를 위해 가공무역업체의 수입원자재 보세처리, 수입통관 시 관세부과 면제, 가공무역수책에 수입사항 기록 후, 재수출 수량에 대해서 등록말소 처리하며, 모든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고, 관할해관에 신청하여 처리한다. 또한 수책기록 내용에 근거하여 제조사양서(BOM: Bill of Material)갱신 및 수책 변화 수출입 현황을 관리한다.

다.

2) 관세법상 통관 규정

(1) 신고인

중국해관법에서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이 스스로 납세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세관의 인가를 받아 등록된 통관대행업체 또는 수출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가 통관납세수속을 처리할 수도 있다. 출입국시 물품의 소유자는 스스로 납세통관수속을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통관납세수속을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⁸¹⁾.

그리고 통관수속기업이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이 위탁인의 명의로 수속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위탁인이 성명한 위탁서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위탁인에 대한 각 규정을 지키며, 통관기업이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의 위탁을 제시하여 자신의 명의로 통관수속을 할 경우 반드시 수하인과 적송인의 동일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한다⁸²⁾.

또한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 통관기업의 통관수속 처리는 통관신고인은 무조건 법에 따라 세관에 등록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통관인은 무조건 법에 의하여 통관종업자격을 취득하여야만 하고, 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등록 등기를 하지 않은 기업과 법에 의해 통관종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인원은 통관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⁸³⁾.

통관기업과 통관인원은 불법으로 타인의 통관수속을 대리할 수 없고 또한 그 업무범위를 초월하여 통관활동을 진행하면 안된다. 통관우대를 받기 위해 중국 세관 기업분류 관리방법⁸⁴⁾에 의한 기업분류를 통해 AA, A,B, C, D의 5개 관리

81) 제9조. 第九 进出口货物, 除另有规定的外, 可以由进出口货物收发货人自行办理报关纳税手续, 也可以由进出口货物收发货人委托海关准予注册登记的报关企业办理报关纳税手续。进出境物品的所有人可以自行办理报关纳税手续, 也可以委托他人办理报关纳税手续。

82) 해관법 제10조. 第十条 报关企业接受进出口货物收发货人的委托, 以委托人的名义办理报关手续的, 应当向海关提交由委托人签署的授权委托书, 遵守本法对委托人的各项规定。报关企业接受进出口货物收发货人的委托, 以自己的名义办理报关手续的应当承担与收发货人相同的法律责任。委托人委托报关企业办理报关手续的, 应当向报关企业提供所委托报关事项的真实情况; 报关企业接受委托人的委托办理报关手续的, 应当对委托人所提供情况的真实性进行合理审查。

83) 해관법 제11조. 第十一条 进出口货物收发货人、报关企业办理报关手续, 必须依法经海关注册登记。报关人员必须依法取得报关从业资格。未依法经海关注册登记的企业和未依法取得报关从业资格的人员, 不得从事报关业务。报关企业和报关人员不得非法代理他人报关, 或者超出其业务范围进行报关活动。

84) 해관총서령 제170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분류 관리방법”(2008.1.30)에서는 세관에 등기등록한 수출

부류를 설정하고 있다. 그 중에 AA, A류 기업은 통관편리조치⁸⁵⁾를 적용하고 B류 기업은 일상적인 관리조치를 적용하며 C, D류 기업은 엄격한 관리감독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⁸⁶⁾.

(2) 신고시기

해관법에서는 수하인과 적송인은 마땅히 세관에 진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입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류를 인도하여 검수 받아야 한다. 국가가 제한하는 수출입화물은 수출입허가증이 없는 경우 통관시킬 수 없으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운수수단의 국경진입 신고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출화물의 적송인은 화물이 세관감독관리구역에 도착한 후 화물을 선적하기 24시간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세관이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해관법에서 규정기간을 초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징수하며 신고한 경우 세관에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⁸⁷⁾. 신고지체가산금의 징수는 운송수단이 입국 신고한 날부터 시작하여 제15일째 되는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관 신고일을 종료일로 하고 중계운송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또는 화물의 지정도착지 도착일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 이다.

(3) 검사

해관법에서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이 화물을 검사할시 수입화물의 수하인, 수출화물의 적송인은 마땅히 현장에 출석하여야 하며 화물의 운반을 책임지고 화물의 포장을 개봉하고 재차 봉인한다. 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직접 개봉·재검사하거나 견본을 인출할 수 있으며⁸⁸⁾, 수하인 및 적송인

송수화인 및 통관기업의 분류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AEO인증업체와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85) 편리혜택은 화물신고, 검사우선제공, EDI통관, 담보보증금등의 면제이다.

8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분류 관리방법 제4조.

87) 해관법 제24조. 신고지체가산금은 통관 신고일과 종료일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고,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 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50위안임

88) 해관법 제26조. 第二十六 海关接受申报后, 报关单证及其内容不得修改或者撤销; 确有正当理由的, 经海关同意, 方可修改或者撤销。

의 신고한 후 세관총서가 비준하면 당해 수출입화물은 검사를 면제를 가능하다.

(4) 통관

중국의 통관절차는 수입지 세관의 현장감독업무의 마지막 단계로 세관담당자는 전자데이터에 의한 통관(서면에 의한 통관), 세관심사, 신고접수 및 세금고지서발급, 세금납부 및 물품검사, 통관의 종료 순으로 진행된다.

(5) 전자통관

중국해관법에 의거하여 수출입화물의 세관신고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마땅히 종이재질의 세관신고서와 전자데이터(EDI) 세관신고서의 형식을 채택하여야 한다⁸⁹⁾고 규정하고 있다.

3. 통관검역제도⁹⁰⁾

1) 검역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

중국에서 검사 및 검역은 주요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檢驗), 출입국 동식물에 대한 검역, 국경위생검역(檢疫)을 의미한다. 검역은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이 검사·검역 업무를 총괄하다. 출입국검사검역국은 각 지방에 설립하고 지방의 수출입 상품의 검사·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단일한 행정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35개의 부서가 설치된다. 이 지방 출입국검사검역국은 관할구역의 출입국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과 수출입 상품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국가표준화관리국)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전국에 통일적인 인증인가업무를 감독 및 관리를 협조하는

89)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39-42.

9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128-132. 참조 정리.

주관부서이다.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국가표준화 업무를 통일적으로 감독 및 관리하며, 무역기술장벽협정(WTO/TBT agreement)의 집행을 통해 관련 표준화의 통보 및 자문을 책임지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중국출입국검험검역협회, 중국국제여행위생보건협회, 중국품질검험협회, 중국계량협회, 중국인증인가협회, 중국표준화협회, 중국계량측정학회, 중국위조방지협회, 중국설비감리협회, 중국품질관리행촉진회 등 10개 소속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입계약에서 약정하거나 수출입상품 수하인 또는 발송인이 검험검역을 신청할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위탁 접수할 수 있으며, 검험검역을 진행하고 증서를 발급해 준다.

그리고 법정검험 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샘플링방식으로 감독 관리를 진행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과 연관되거나 가치가 비교적 높거나 기술이 복잡하거나 환경과 위생 및 전염병 표준과 관련이 있는 수출입상품에 대해 수하인 또는 적송인은 반드시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 사전검험 및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화물 도착 후 최종 검험과 배상청구조항을 약정하도록 하고 있다.

2) 검역 방법 및 절차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출입국검험검역기구가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목록(법정검험목록)」을 발표 및 조절하며, 법정검험목록에 포함된 상품에 대해 강제성 검험을 진행하고 있다.

수출입식품생산기업에 대하여 위생등록(注册登記)관리를 실시하며 위생등록을 취득한 수출입식품생산기업에서 생산한 식품만 수입 혹은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⁹¹⁾. 수입식품생산기업은 위생등록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입식품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위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입식품은 법정 검험검역 상품으로서 주로 자체 검험을 위주로 하며 기타 수출입상품의 공동검험, 위탁검험과 인가검험 형식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체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자체 기술력(검사설비와 검사인원을 포함)을 이용하여 자체로 샘플 추출, 샘플 제작과 전체 항목의 검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위생, 환경보호 등 사회공익의 상품 및 대외무역계약이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증서로

91)

국무원, 수출입상품 검험법실시조례, 국무원령 제447호, 제32조,

가격을 계산과 결산할 것을 요구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자체 검험을 채택해야 한다.

<표 III-3 > 중국의 검험검역제도

구분	관련법규	관리대상	관리방법
수출입상품 검험제도	「수출입상품검험법」 「수출입상품검험법 실시조례」	수출입상품의 품질, 규격, 수량, 중량, 포장 및 안전, 위 생, 건강, 환경보호, 사기방지 등 요구의 부합여부	- 법정검험 - 계약검험 - 공정 감정 - 위탁검험
출입국동식 물검역제도	「출입국동식물검역 법」, 「출입국동식물검역 법실시 조례」	출입국 동식물과 동식물제 품의 생산, 가공, 저장과정에 대한 동식물 검역	- 입국검역, 출국검역, 중계검역, 출입국 휴대품 과 우송물 검역, 출입국 운송수단 검역
국경위생 감독제도	「국경위생검역법」 「국경위생검역법실 시세칙」,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실시조 례」	출입국 교통공구, 화물, 운 송용기 및 항구 관할구역의 공공장소, 환경, 생활시설, 생 산설비에 대한 위생검사, 감 정, 평가와 샘플링 검험	- 출입국검역 - 국경전염병검사 - 출입국위생감독

자료: 중국 해관총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재인용.

수출입상품 검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은 공동검험이다. 즉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조직에 근거로 출입국검험검역기관과 수출 생산기업, 수입화물 인수부서 및 관련 업체가 규정한 표준과 방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수출입상품의 샘플 추출과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어떤 상품 또는 검험항목에 대해 검사설비 또는 검사장비가 부족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은 생산, 과학연구, 교육기관의 시험실 또는 인증을 받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외 검험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수출입상품 검험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험자격이 있는 국내외 기타 검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또한 그 검험결과에 의해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명을 발급한다.

인가검험은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이 일부 수출생산기업 또는 수입화물 인수기관의 검험기관 또는 검험인원에 대해 인가하여 인가를 받은 검험기관 또는 검험

인원의 검험결과에 의하여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수출입식품, 화장품의 경영자 혹은 대리인은 수출입 전에 출입국 경검험검역기구에 라벨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 요구와의 부합 여부, 품질관련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하여 검험을 진행하고 「라벨검험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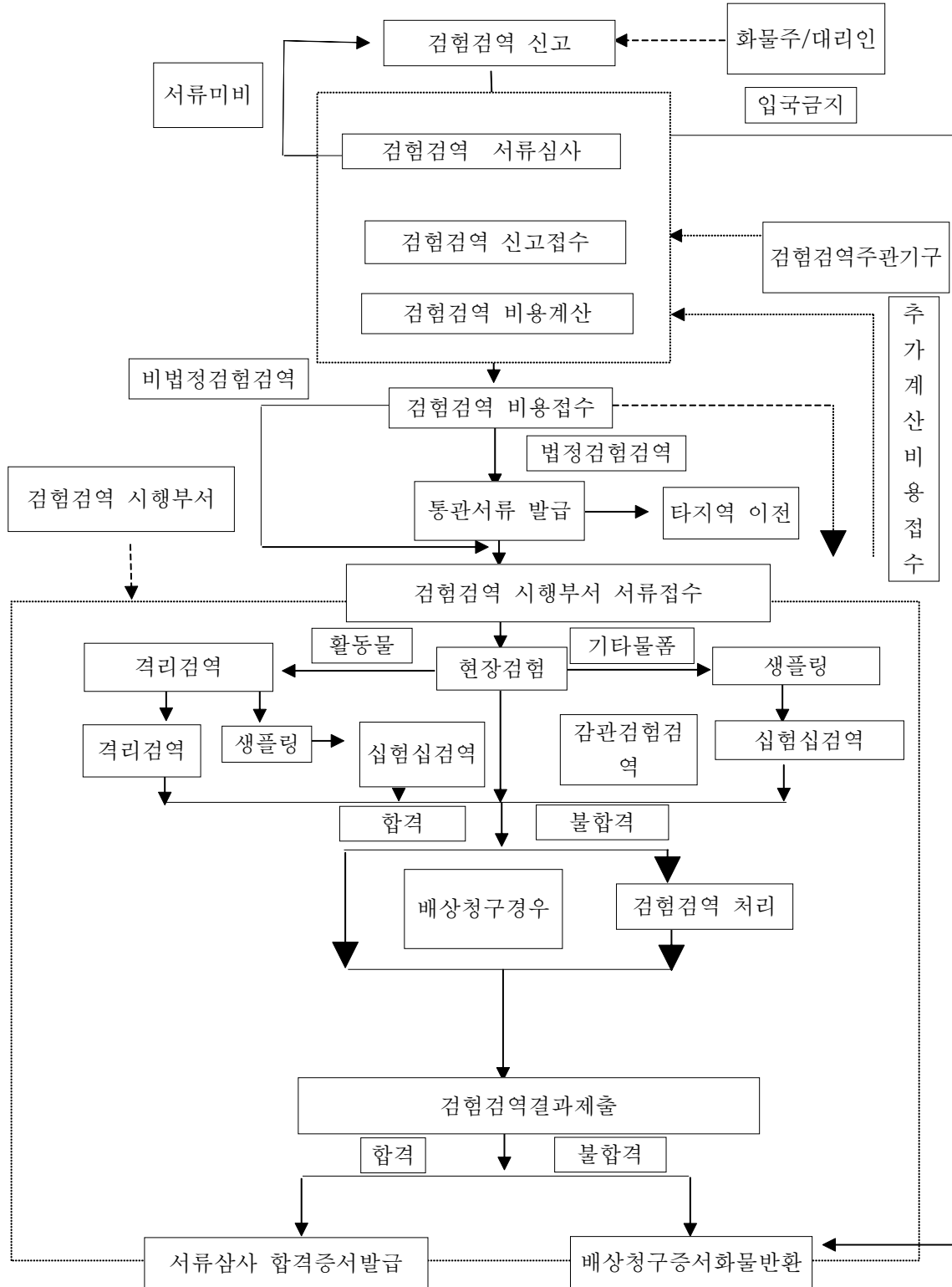
비준, 허가증 등 관련 증서에 검험검역 장소를 규정한 경우, 규정한 장소에서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하고, 대중상품, 부식 변질하기 쉬운 상품, 폐기물품 및 하선할 때에 포장과손 또는 수량 부족이 발견된 상품은 반드시 하선항구 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⁹³⁾.

설치 시운전과 연관되어 검험을 진행해야 하는 플랜트 설비, 기계전기계측기제품 및 항구에서 개봉한 후 포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품은 반드시 수하인 소재지 검험검역기구에 신고해야 하며, 기타 입국화물은 반드시 입국 전 또는 입국시에 입국지역 검험검역기구에 신고해야 하며, 직통식 통관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는 입국지의 선택에 따라 항구 검험검역기구 또는 목적지 검험검역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92) 국무원, 수출입상품 검험법실시조례, 국무원령 제447호, 제3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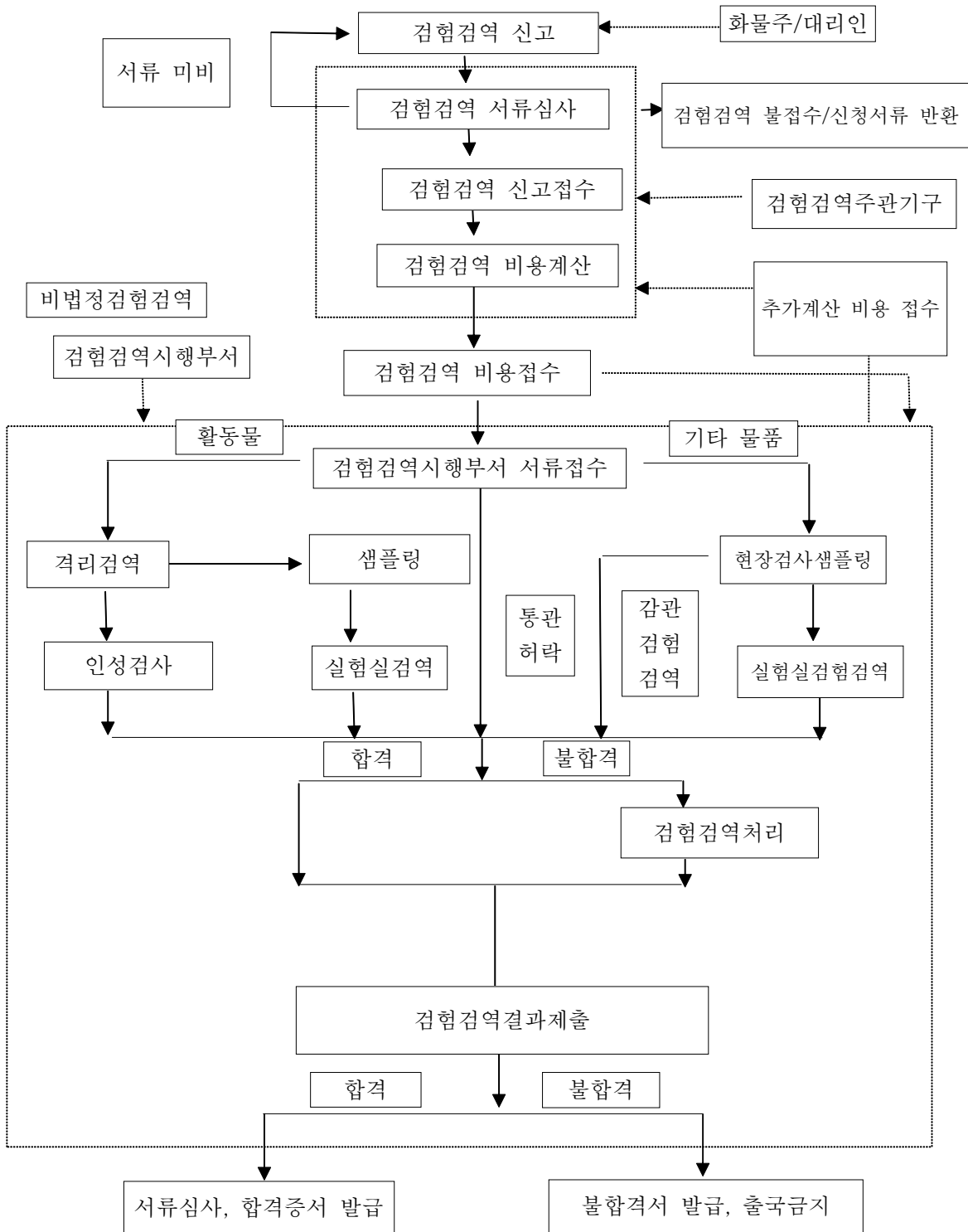
93)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수출입상품 검험법실시조례」, 국무원령 제447호, 제18조,

<그림 III-2> 수입화물 검험검역 절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그림 III-3 > 수출화물 검험검역 절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제3절 수입통관상 비관세 장벽

1. 비관세 장벽 개관

<표 III-4> 중국의 주요 비관세 장벽

유형	주요 내용
통관관련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의약품 통관지 제한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환급규정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이중 세관검사(발체 검사 후 전량 검사) -관세부과 기준가격 비공개 -보세운송 불허 -관세분류의 자의성 및 화물에 대한 상세정보의 기밀보호 미흡 -통관 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과도한 통관심사
기술무역장벽(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인증제도(CCC) -자발적 인증제도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China REACH) -자동차용 타이어 인증제도 -가전제품 에너지효율성 표기 부착 -수입전자제품 전자수용강제검사 실시 -수입계량구기구 형식 검증제도 -목재포장재 열처리 증명 요구
수출입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 금지 및 제한 -수출입업체 관리제도 -자동차 수입허가 관리제도 -쿼터 관리(설탕, 섬유, 밀, 옥수수, 벼와 쌀, 면화, 화학비료 등) -중고제품 수입금지(기계, 전기전자, 의류) -수입상품 분류관리제도 -수입허가증 발급시 민감한 기업정보 요구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관련 규제(수입식품 중문 라벨 부착 등) -의약품관련 규제(의약품 허가심사시 중국 자체 규정 약전 사용 등)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제 -화장품 수입절차(강제성표준 규정)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에서 발췌 인용 및 수정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수단을 통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수단을 통칭하며, 그 종류로는 수입허가제, 기술무역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통관 관련 규제, 원산지 규정 및 무역규제 등이 있다⁹⁴⁾.

중국은 WTO에 가입 이후 관세 인하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 관세가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크게 줄어도 반면 각종 비관세 조치를 통한 수입규제는 중요한 정책수단임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무역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관세장벽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복잡성, 불확실성, 계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교역통제수단으로 부각되었다. 비관세장벽은 각국의 상이한 문제와 제도, 지리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WTO도 각 나라마다 이러한 차이점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비관세조치들을 명확하게 유형화하기는 어려우나, 크게 수입규제,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통관관련 규제,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⁹⁵⁾. 본 논문에서는 주요 통관관련 규제와 기술무역장벽에 대해 연구한다.

2. 기술무역 장벽

1) 개요

무역상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무역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⁹⁶⁾. 기술규정 및 표준 관련 제도에서는 상품에 대한 각국가 간 관련 기준 및 절차상 주로 자국 상품 및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규정을 제정한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되고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

94) ,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실, 2012. 2.

9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141.

96) 이석, "기술무역장벽이 중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7

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에 따라 국가간 자국 안전과 환경보호, 상품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차이에 나타난 장애를 무역상 기술장벽이라고 한다⁹⁷⁾. 또한 TBT 수출입통관 비관세장벽중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다⁹⁸⁾. 중국은 한국과 달리 대체로 강력하고 복잡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 분야의 대외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가간 표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표준 및 관련 제도의 차이가 각국의 무역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다.

기술무역장벽은 농산품, 위생검역, 섬유 및 의류 등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등 내용을 포괄하며 각국간 상이한 국제표준 및 기술규정을 채택하여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⁹⁹⁾

WTO의 TBT은 기술규격과 기술요건을 법적에 의거하여 강제성 여부에 따라 기술규정과 표준으로 구분한다. 기술규정 또는 표준은 주로 정부 정책당국, 민간 표준화기구 또는 단체가 상품에 대한 적용 가능한 행정조항을 포함하면서,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모든 절차이다. 기술규정과 표준 관련 제도는 기술무역장벽의 완화시키며 복잡한 기술체계의 조화와 투명성의 제고, 정보비용의 지출절감, 환경 보건, 기만적 행위의 방지 등 관련된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설정된다. 또한 각국의 기술 장벽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 국가안보, 환경보호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국의 국내산업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을 제정한다.

WTO에서는 주요 기술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무역상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PS) measures)가 있다.

GATT회원국들은 최혜국대우(General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는 주요

97) .외교부, 「분야별 통상환경(2014 외국의 통상환경)」, 2014.12., p.217.

98) 주요 비관세 장벽은 수량제한, 수출보조금,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 유지협정, 관세할당제, 반덤핑관세, 최저가격규제, 긴급수입제한조치, 행정적인규제, 기술적 규제, 외환통제 등 11가지를 분류된다.

99) 엽소령, "기술무역장벽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4.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 관세율을 인하 및 실제적인 무역상에 애로를 해소하려고 제정된 조치이다. 그리고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은 GATT 1947 제 I조의 일반적 최혜국대우(General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조항 및 제 III조의 국내과세 및 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조항 등 일반적인 GATT원칙이 적용되어 왔다¹⁰⁰⁾. 또한 동경라운드(Tokyo Round, 1973~1979년)의 표준협정은 농산물과 공산품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¹⁰¹⁾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1986~1993년)는 동경라운드의 표준규약의 규정이 구체화되고 새로운 무역상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제정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농업협상과정중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중용성을 새로운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 규범화 되었으며 식품안전 및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안전들에 대한 다자간의 원칙을 별도로 설정하게 되었다.

TBT 협정은 SPS 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제외한 모든 기술규정, 자발적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¹⁰²⁾를 포괄하고 있다. SPS 협정¹⁰³⁾은 ① 식품에서 유래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② 동물과 식물에 의해 운반되는 병해충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③ 병해충으로부터 동물과 식물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조치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SPS 협정은 TBT협정과는 달리 과학적인 원리와 증거에 기반을 둔 규제조치만을 인정하고 있다¹⁰⁴⁾.

GATT 체제하의 표준규약으로부터 WTO 체제 하의 TBT 협정과 SPS 협정으

100) , GATT 1947은 각국들이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동일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간 불공정하게 차별을 하지 않는 동시에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취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제XX조 (b)항)을 포함하고 있다.

101) 1979년 도쿄라운드 결과 설정된 TBT 협정은 통상적으로 표준규약(Standards Code) 으로 지칭된다.

102) WTO TBT 협정상의 기술규정은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 등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법규에 의해 강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술규격,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말하고 표준은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는 기술규격,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다. 또한 적합성평가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103) WTO의 SPS 협정상 위생 및 검역조치로서 식품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및 병원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및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동물 또는 식물에 의해 전염되는 병원균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해충 및 병원균으로부터 동물 및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해충의 유입, 정착 및 전파로 인한 국가내의 기타 손실을 방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등을 말한다.

104)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분야별 통상환경(2014 외국의 통상환경)」, 2014.12., pp.218-219.

로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규정의 내용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된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화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표준규약이 GATT 체약국들의 선택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데 비해 새로운 TBT 협정과 SPS 협정은 WTO 설립에 관한 협정의 부속협정으로서 일괄채택방식(single undertaking)을 통하여 모든 WTO 회원국로 참여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다자규범으로서 그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표준규약은 중앙정부의 강제적 기술 규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WTO의 TBT 협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표준화기구와 임의규정인 표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셋째, WTO의 TBT 협정은 기술규정과 표준의 적용범위를 제품의 성능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공정과 생산방법에까지 확대하였다¹⁰⁵⁾.

2) 기술장벽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¹⁰⁶⁾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특정 국가가 협정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에 침해당하거나 손상되었다고 생각할 때 기술규정을 준비, 적용과 채택하는데 있으며, 관련된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고 기술규정은 제안된 기술적으로 내용이 국제 관련 표준 내용과 불일치한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무차별원칙으로 적용하고 이 기술규정은 기타 회원국과 무역교역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WTO 사무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1995~2013년까지 WTO 사무국에 통보된 통보문은 총 15,754건으로 기록되었다. 미국은 1,989건으로 제일 많고 유럽연합은 1,083건, 브라질은 1,078건, 중국은 1,066건에 있어 한국은 10위로 600건의 통보문을 기록하였다¹⁰⁷⁾.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4년에 215건의 가장 높은 건수로 기록하였다.

이와 달리 WTO에 제출된 통보문은 각국가간 통상교역상에 잠재적인 부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기술장벽으로서 관련 동향의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을 3가지 있다.

105) 외교부, 「분야별 통상환경(2014 외국의 통상환경)」, 2014.12., pp.221-222.

106)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분야별 통상환경(2014 외국의 통상환경)」, 2014.12., pp.222-224. 참조 정리함.

107) Number of specific trade concerns raised since 1995, found in "Eighteenth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G/BT/33,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표 III-5> 연도별 TBT 통보 및 특정무역현안 건수 추이

연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통보 문수	364	608	764	876	1,035	1,263	1,492	1,432	1,230	1,571	1,626	17,416
S T C수	4	17	24	36	46	58	74	61	75	94	73	714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2014. 2013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첫째, TBT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만들고 각국 교역상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경기불황을 경험하였던 1997년, 2003년, 2009년, 2012년의 경우 모두 전년에 대비하여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각국의 기술규제 도입 배경에 세계경기침체가 어떠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TBT 통보건수가 원래 선진국을 중심으로 현재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경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1995년 WTO 출범직후에는 네덜란드,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통보건수 비중이 많아졌고 최근 들어 개도국 (중국, 브라질, 우간다, 케냐,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통보문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3.4%에서 2014년 80%로 크게 증가하였다¹⁰⁸⁾. 셋째, 산업쪽으로 보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통보건수가 가장 높다. 즉, 전기기계, 고무/화학 및 일반기계 등의 통보건수가 기타 산업 보다 많다. 이는 이들 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격화 및 표준화 작업이 보다 활발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2013년 5월 한국에서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¹⁰⁹⁾’)에 대해 미국, EU, 스위스, 일본 및 중국 등은 지난 2011년부터 WTO TBT 위원회에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의 총 무역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이 지난 2008년부터 자국 내 기존 화

108) WTO WTO TBT 협정상 의무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는 기술규제와 관련한 통보문의 제출은 기본적으로 기술규제 및 그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TBT 관련 통보문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투명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통보문들이 그 내용면에서 기술규제의 신규도입 또는 기존규제의 강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무역상기술장벽의 강화로 볼 수 있다.

109) 국제 화학물질관리제도 강화에 대응하여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심사와 평가를 통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률 제 11789호, 2013.5.22.제정)

학물질 등록 제도를 제·개정하였다.

<표 III-6> 기술장벽의 일반적인 유형

기술무역장벽의 구분 및 유형		주요내용
기술규정	차별적 기준 적용	- 현재 조달비율의 계산할 겨우 국내외 업체간 산정방식 차별 적용
	상이한 표준 적용	- 국가, 지자체, 공동체 회원국간 독자적인 표준제도 운영 - 동일 국가내 동일제품에 대한 일부 지방에서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금지 조치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 제품표준 및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과도한 기술요건	-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설정 - 까다로운 규격 및 마크인증 취득절차
	투명성 결여	- 빈번한 기술규정의 개정 및 불충분한 사전공시기간설정
임의 표준		- 민간표준화기구 및 단체 중심으로 설정된 자발적인 임의표준 적용과 국내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인증취득에 실질적 강제성 부여
적합성평가	중복검사	- 이미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중복검사 강요 - 인증제도의 이원화(자국 국내 및 국제적 인증취득 불인정)
	과다시간 소요	- 인증마크 획득할 경우 과다시간 소요 -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검사지연
	과다비용 소요	- 높은 검사비용 -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발생
	투명성 결여	- 판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검사원의 자의성에 따른 판정 -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민간업체에 의한 검사
상품표시부착		- 국내조달비율의 표시를 요구하여 자국산 구매의욕 고취 - 자국어로 표기 의무 - 표기를 상품자체에 하도록 요구

세계 주요국들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제·개정하여 산업계에 위해성평가 정보생산 및 제출 의무화를 시행함으로써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위해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매년 화학물질 수입량 증가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감안하여, 국제 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및 화학물질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평법을 제정했다. 한국 화평

법의 적용범위는 EU REACH 규정¹¹⁰⁾, 일본 화심법¹¹¹⁾과 중국 SEPA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와 유사하며,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은 한국의 화평법으로 인해 연구개발(R&D)과 제품개발이 늦어지고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2011년 이후로 3차례에 걸쳐 특정무역현안 (STC)¹¹²⁾을 제기하였다. 특히 고무/화학이 대한국 수출비중의 15% 이상인 미국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TBT 제 2차 정례회의에서 화평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2006년 이후 20% 이상을 점하며 제 1의 대 한국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은 일본의 경우 화학공업일보¹¹³⁾ 등을 통해 화평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¹¹⁴⁾

아울러 최근 2014년 11월 타결된 한중 FTA에서 양국은 TBT 애로완화 방안, 제품안전협력, 시험인증기관, 중국진출 협력 등이 반영된 15개조(article)의 TBT 협정문에 타결한 바 있다. 중국이 기체결한 중·스위스 FTA의 경우 TBT는 11개조, SPS는 12개조로 상호간 균형을 유지하는데 반해 한·중 FTA에서는 업계의 TBT 애로해결 방안이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협정문에 반영되었으며, 15개조로 구성된 가장 포괄적인 협정문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한중 양국은 시험·인증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저위험 전기용품 분야 일부 품목에 대해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을 촉진하고자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TBT 애로 해소, 시험인증기관 중국진출 지원, 소비자 제품안전 정보 및 규제시행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지원 등 향후 TBT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상호간 협력할 계획이다.

110)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약자로,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규정

111)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2011년도 개정되었음.

112) TBT 통보문, G/TBT/N/KOR/305

113) 일본의 화학공업일보('13.10.7일자)는 최근 사설에서 “화평법은 유럽의 비슷한 제도인 ‘REACH’와 달리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도 등록을 요구하며, 이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함 (<http://www.kagakukogyonippo.com/headline/2013/10/07-13100.html>.)

114) 일본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 제 3차 WTO TBT 위원회에서 한국 화평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들이 한국의 화평법 규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경제산업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산업계의 여론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표 III-7> 중국의 인증제도의 종류

종류	강제인증제도 (CCC) ¹¹⁵⁾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자발적 인증제도 ¹¹⁶⁾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 China RoHS ¹¹⁷⁾	China REACH 신화학물질관리제도 ¹¹⁸⁾
정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 품목은 반드시 동 인증을 취득하여 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 내 수입, 유통 판매 가능	중국 내 모든 인증 행위는 중국정부에서 허가한 인증기관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인증법인을 중국에 설립하여 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	RoHS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모든 전기 전자 제품에 6대 유해물질 ¹¹⁹⁾ 사용을 금지한다. (동 지침은 2003년 2월에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REACH는 운영 및 관리면에서 EU의 REACH와 유사하여 역내 기업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고 미등록시 역내시장의 진입이 금지된다.
신청 절차/인증 활동/ 증명 절차	신청 및 접수→서류심사→제품검사→공장시료 채취 검사→평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등록자본이 300만위만 이상, 관리분야 경력이 있는 10인 이상의 전문 인증인력이 필요하며, CNCA(중국 국가인증인정 감독관리위원회)의 기준을 거쳐 인증기관 비준서를 획득해야만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수입통관 시 적합성 증명을 위한 시험 분석 실시하고 중국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해서 재수출되는 부품 및 완제품에 대한 언급 없다. ¹²⁰⁾	국제공인분석기관 자료 인정 신고의 종류 ¹²¹⁾ : 보통신고, 간이신고, 연구개발신고 (scientific research record notification)로 나뉜다.
법적 근거/인증 기관	「강제성제품 인증관리규정」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상품검사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인증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인증기관 관리방법」 인증기관은 공정, 독립, 객관적으로 인증을 해야 하며 품질시스템,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개, 심사결정, 정보과일링, 인증인력 관리 등 업무 법적인 책임을 진다.	China RoHS 의 근거법률인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은 중국에 있는 7개 부서가 공동으로 2006년 2월 28일 발표하고 2007년 7월 3일 시행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REACH)」
대상 범위	리스트, 기술관련 법규, 마크, 비용 등		중국 국내에서 전자정보제품 생산, 판매 및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 (수출제품 생산행위는 제외됨)	기존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에 참조 정리 및 인용

115) (2011)에서 인용

116) 정환우 "한·중 FTA 비과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의 요약 인용, 한국무역협회, 2012.

117) 한국조세연구원(2011)에서 인용

118) 정환우 "한·중 FTA 비과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의 요약 인용, 한국무역협회, 2012.

119) 6대 유해물질이란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등을 말함

120) KOTRA(2013) 인용

121)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 개정판, 제9조

3) 강제인증제도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인증제도는 WTO 체제에서 각 국가간의 무역장벽이 없어진지 오래되었지만 자국 국민을 위한 안전성확보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국에서 모든 공산품에 대한 강제인증과 임의인증등의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본국 산업을 보호와 육성하려는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예외없이 2011년 WTO에 가입하고 2003년 5월 1일부터 중국강제인증제도의 강제시행이 하고 있다. 즉, 중국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이중에 CCC인증 대상 품목은 반드시 강제인증을 취득하여 CCC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만약에 업체가 인증을 못 받을 경우 이 제품은 중국 국내에서 출고, 수입, 유통, 판매 및 경영활동에 사용 불가능하다. 그리고 CCC인증 마크가 부착되지 않고 위조, 도용, 변조한 마크를 부착한 제품에 대한 판매 또는 수입할 때 행정처벌과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¹²²⁾.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에 WTO의 기본정신에 따라 중국의 제품안전 인증제도로써 중국경내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제품(CCEE)과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CCIB)은 중국국내에서 강제인증제도 업무를 정비하고 규범화를 시키기 위해 인증마크를 CCC로 통합하였다.¹²³⁾ 2003년 5월 1일에 자동차와 전기제품 등 1차의 19류 132개 품종을 'CCC' 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2006년 12월에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한 CCC 인증제도를 추가하게 되었고, 2007년 6월에 완구제품에 대한 CCC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2008년 6월에는 용제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개 건축용 인테리어 품목을 추가하고 인증품목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¹²⁴⁾.

강제인증 시행품목은 반드시 관련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인정을 받던 인증기관에서 중국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상품은 인증을 취득한 경우 강제인증마크를 구입하며 부착한 후에 중국 국내에서 판매와 중국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CCC인증 신청절차는 신청과 접수, 서류심사, 제품검사, 공장심사, 공장시료

122) CCC인증센터 홈페이지: <http://www.ccc-cn.org/> 자료실에 번역 인용

123)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상품검사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및 제품인증관리조례에 기초하여 검사대상 리스트, 기술관련 법규, 마크, 비용 등을 일원화한다는 목표 아래 2002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124)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아시아 대양주」(2014 외국의통상환경), 2014.12. p.25.

채취 검사, 평가의 순서로 진행되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 9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연구용 또는 시험용으로 수입되는 제품, 완제품 등 가공 이후 수출하기 위해 부품, 제3국 무역을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 기술 검토의 경우, A/S 또는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수리를 위한 부품 및 기타 특수상황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에 강제인증 면제신청을 하여 강제인증으로 면제¹²⁵⁾를 받을 수 있다 ¹²⁶⁾.

그리고 중국에 있는 외국대사관, 공관 및 사절단은 공·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개인물품, 외국의 무상구호용 상품 또한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하기 위해 수입되는 상품과 기타 중국정부가 인정되는 특수목적으로 수입물품은 강제인증 비대상품목이다.

동일한 HS코드에서 일부 규격품목만 CCC인증을 대상으로 규정될 경우 기타 규격 품목은 CC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 세관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해당 물품이 인증 대상으로 간주되어 통관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다¹²⁷⁾.

2013년 중국 정부는 기존의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SFDA)을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 확대하고 개편되다. CCC인증대상중 의료기기를 제외하여 CFDA에서 허가 심사하도록 하였다. 현재 CCC 인증대상품목은 총 21류 152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7.6.1일부터 아동용 이동보조기구, 전기완구, 플라스틱완구, 장난감 총 등 탄환발사완구, 금속완구 및 인형등 6종의 완구 제품에 대한 CCC 인증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 3월 1일 부터 중국품질인증센터(中國質量認證中心) 등 지정인증기구에 완구제품 CCC 인증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125) 면제 신청가능한 경우는 연구용 또는 시험용으로 수입된 물품, 완제품 가공 후 수출을 위한 부품 제3국 무역을 위해 중국을 경유만 하는 제품, 기타 특수상황으로 수입되는 제품 등이다.

126) China Certification (<http://www.china-certification.com/en/ccc-exemptions>), 제품의 CCC인증 취득을 생략할 수 있음, 제품 통관 전에 면제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면제확인서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중국해관수칙에 따름

127) 전군중,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2011. pp.56-59

<표 III-8> 중국의 강제인증품목

(단위:개)

연번	분류	품목수
1	전선 및 케이블	5
2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6
3	저압형 전기장비	9
4	정공률 전동기	1
5	전동공구	16
6	전기용접기	15
7	생활용 전기제품	18
8	음향제품(단, 하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16
9	정보기술장비	12
10	조명장비	2
11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9
12	자동차	17
13	자동차 타이어	3
14	안전용 유리	3
15	농기계 제품	2
16	라텍스 제품	1
17	의료기기	7
18	소방기기	3
19	기술안전보호제품	4
20	가정용 장식, 리모델링 제품	3
21	장난감	6
22	IT 제품	1
합계		213

자료: <http://www.china-certification.com/zh/list-of-ccc-mandatory-products> 참고 작성

중국은 현재 연간 완구생산규모가 500억 위안에 달하고 완구생산기업도 광둥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8,000개사가 있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 수입국들은 중국 생산된 완구제품의 품질에 대한 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에서도 완구에 대한 관련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완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¹²⁸⁾.

4) 자발적 인증제도

128)

· 외교부, 「아시아 대양주」(2014 외국의통상환경), 2014.12. pp.26-27.

중국 내 모든 인증 행위는 중국정부에서 허락한 인증기관에 부탁하거나 다른 인증법인을 중국에 설립하여 인증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인증기관 관리방법이다.

따라서 인증기관 및 인증인력의 업무에 따라 행위를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인증시장의 인증감독부처가 같은 척도를 가지고 있음에 법에 따라서 행정,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인증기관을 설립하려면 등록자본금이 300만 위안 (약 5억원)이상, CNCA(중국 국가인증인정 감독관리 위원회)의 기준을 거쳐 인증기관의 비준서를 취득하여야만 하고,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10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로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은 관련 제품인증에 적합한 테스트, 검사 등 기술력도 갖추어야 하며, 외자인증기관을 설립하려면, 외국 투자자가 국외에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인증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불량기록이 없고, 인증기관은 인증교육 및 인증자문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인증기관은 독립, 공정, 객관적으로 인증을 해야 하며 위험관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결정, 인증인력관리, 심사결정, 정보공개, 인증규정, 비용기준, 인증서, 인증범위등 현황을 적시에 사람들에게 공개하므로 인증과정과 인증결과의 진실성을 보증해야 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인력은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¹²⁹⁾

이 제도의 시행으로 중국 진출시 한국 인증기관의 사업 제한 및 자격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중국내 인증활동에 대해 어려워지고 있고, 운영에 대한 비용도 늘어날 전망이 크다¹³⁰⁾.

5)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

China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란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 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을 폐기한 이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한다.

129)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175-176. 참조 정리.

130) 정환우 "한·중 FTA 비과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의 요약 인용, 한국무역협회, 2012

China RoHs의 근거법률인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은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공상행정 관리국, 국가질량 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 환경보호총국 등 7개 부서가 공동으로 2006년 2월 28일 발표하고 2007년 3월 1일 시행기로 결정하였다.

China RoHs는 전자정보제품 회수 처리 및 재활용 업무를 기초로 하여 ‘오염방지 및 예방우선’이라는 환경보호 원칙을 구체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¹³¹⁾ 등 난연제 사용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제품 연구 개발과 설계, 생산, 판매, 수입에서부터 유해물질에 대한 통제를 하면서 환경오염 물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친환경 물질로 대체하는 목표이다. 그리고 폐기 전자정보제품의 회수, 해체, 처리와 재이용에 대한 기초를 다짐으로써 생산자가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천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다.

China RoHS는 2007년 3월 1일부터는 1차적으로 단계별로 시행되는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 부착 및 정보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고 적용 대상 전자정보제품은 중국의 신식산업부 ‘통계전자산업경제지표소’가 활용하는 ‘전자정보산업업종분류표’에 근거하여 11종¹³²⁾(1,400여 개의 세부 품목으로 구성)으로 구분된다.

<표 III-9> China RoHS 적용 대상범위

구분	China RoHS 적용 여부
제품, 부품 수입시	적용
부품수입 → 중국내 조립 → 중국내수	적용
제품, 부품 수출시	미적용
부품수입 → 중국내 조립 → 제품수출	미적용

자료: KOTRA국가정보(2013)

중국은 시행되는 China RoHS가 장기적 목표는 국내 자연환경의 개선과 산업구조의 개편이고 단기적으로는 EU의 조치에 대해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한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동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EU 규칙에 비해 누락된

131) 6 유해물질이란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등을 말함.

132) 여기 11종에는 전자레이더 제품, 통신설비 제품, 라디오 TV 설비업종 제품, 컴퓨터 관련 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측량·계측기기제품, 전자공업 전용 설비제품, 전자조립부품(元件), 전자기기 핵심부품(器件), 전자응용제품, 전자 전용재료제품 등이다.

품목이 있고 국제 기술수준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¹³³⁾.

중국의 ‘관리방법’과 EU의 RoHS 지침은 다음 4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법률성 문건, 전자정보제품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됨(사용 금지 및 감량화), 모두 무역활동과 관련됨(화물 무역), 사용제한과 금지되는 유해물질이 동일하다. 모두 6종으로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등 있고 반면 중국의 ‘관리방법’과 EU RoHS 지침은 다음 6가지의 차이점을 갖고 있다.

① 중국의 ‘관리방법’은 다른 전환 단계가 필요없는 하부 법률성 문건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으나 EU의 RoHS지침은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EU회원국이 법률로 전환해야 시행을 할 수 있다.

② 중국의 ‘관리방법’ 조정대상은 전자정보제품인데 비해 EU의 RoHS 지침의 조정 대상은 교류전류(AC)가 1,000V를 초과하지 않으며 직류전류(DC)가 1,500V를 초과하지 않는 전자전기설비로 EU RoHS 지침 조정대상 범위가 중국의 ‘관리방법’에 비해 훨씬 방대하다.

③ 중국의 ‘관리방법’은 유해물질 통제 감독관리에 ‘목록’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EU의 RoHS 지침은 ‘WEEE법’ 중의 8대류 제품 전부를 포함시키고, 이 중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통제기술이 미성숙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고 있다.

<표 III-10> China RoHS와 EU RoHS 비교

구분	China RoHS	EU RoHS
시행일	2007년 3월 1일	2006년 3월 1일
시행시점에서 요구사항	-생산자는 2007년 3월 1일부로 제품 라벨링 의무규정이 있음 -유해물질 제한 및 강제인증 이행시기는 내년 3월 이후 늦춰질 것으로 예상	-작용대상 제품은 지침해당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법적 제재조치 대상이 됨
의무이행주체	설계자, 생산자, 수입자,	생산자

133)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178-179. 참조 정리.

	판매자	
적합성 증명절차	-수입통관 시 적합성 증명을 위한 시험 분석 실시. 중국 내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해서 재수출되는 부품 및 완제품에 대한 언급은 없음	-기업의 자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환경성을 관리하고 EU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적합함을 증명(자체 선언 방식) -적합성 문제가 제기될 때 감독기관이 사후관리
제한유해물질	-6대 유해 물질 및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유해물질(규제대상 세부 유해물질 목록은 따로 규정할 예정)	* 6대 유해 물질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PBDE)
RoHS 예외사항	-없음. 향후 해당사항 반영 예상	-있음. 특정 용도에 대해 적용 예외 인정
라벨링 규정	-제조원산지, 유해물질명 및 함유량, 포장물 원료 목록, 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유해물질이 누출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 상당히 광범위한 라벨링의 무사항 규정	없음
법규개정	매년	4년마다

자료: KOTRA(2013)

④ 중국의 ‘관리방법’은 2006년 2월 28일 공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나 유해물질 제한 및 금지 시점은 아직 미확정이다. EU의 RoHS지침은 2003년 2월 13일 공포, 2004년 8월 13일 EU 회원국 법률(법규)로 전환하고 2006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EU의 RoHS 지침이 중국의 ‘관리방법’보다 빨리 시행되었다.

⑤ 중국의 ‘관리방법’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목록’을 제정해야 하고 ‘목록’은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면, EU의 RoHS 지침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기준 제정으로 충분하다.

<표 III-11> 대상자별 관리방법의 의무준수사항

대상	관련 근거	의무준수사항
전자정보제품 설계자	관련 방법 제 9 조	전자제품 설계 시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또는 원소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또는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공법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전제하에 무독·무해 또는 해독이 적고 쉽게 분해되어 회수 재활용에 편리한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및 수입자	관리 방법 제 10 조 - 제 14 조	<p>제품 생산 및 제조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보제품의 생산 또는 제조시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자원 이용 효율이 높고 회수 처리가 용이하며 환경 보호에 유리한 재료·기술 공법을 채택해야 한다. <p>환경보호 사용기한 명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전자정보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결정한다.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기재해야 하며, 제품 부피 및 기능의 제한으로 제품에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제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표시 양식 및 방식은 공업정보화부와 국무원 유관부서가 통일화시켜 규정하며, 표시 샘플 및 방식은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및 원소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p>라벨링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수입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또는 원소에 관한 라벨링 작업을 해야 하며, 라벨에는 유해물질 또는 원소 명칭, 함유량, 소재 부품 및 회수 재활용 여부 등이 기재돼야 한다. - 제품 부피 또는 기능 제한으로 제품에 표기할 수 없을 경우 제품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라벨 양식 및 방식은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무원 유관기관이 합의하여 규정하며, 전자정보 제품 유해물질 또는 원소 통제에 관한 국제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p>포장재 제작 및 사용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보제품 포장재 제작 및 사용시 반드시 전자정보제품의 유해물질 또는 원소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또는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무독·무해 및 분해가 용이하고 회수 재활용에 편리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전자정보제품에 포장재 재료명을 표기해야 하며 부피 및 표면 제한으로 표기가 어려울 경우 제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판매자	관리 방법 제 15 조	전자정보제품의 판매자는 반드시 제품 수입투트를 엄격히 관리하며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또는 원소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또는 업종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정보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자료: KOTRA(2013)에서 재구성

⑥ 중국의 ‘관리방법’ 중 유해물질의 관리에 ‘두 가지 접근방식’을 채택하는데 첫째는 ‘관리방법’ 발효일 부터 시장에 진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자기선언’ 방식으로 관련 환경정보를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전자정보 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이하 ‘중점관리목록’)의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감독하여 유해물질의 대체 또는 제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제인증(CCC)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EU의 RoHS 지침은 유해물질 통제에 ‘자기선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단, EU가 요구하는 자기 선언방식(Self Certification)은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RoHS 강제인증 절차 적용품목 및 인증 신청절차: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http://www.cnca.gov.cn>)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 목록’에 포함되는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강제 인증관리(CCC)를 실시한다. 실제 RoHS CCC 신청은 중국질량인증중심(www.cqc.com.cn)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 절차는 CQC 접속, 화면 왼편에 사용자 ID 및 PD 입력, 인증 종류 선택 후 CQC 표지 인증 신청, 좌측의 RoHS 인증 클릭, 제품 종류 선택, 상세하게 신청서 작성, 신청 시 구비서류¹³⁴⁾를 준비하여야 한다.

6) China REACH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중국은 EU가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of Chemicals)를 실시하여 환경기준을 강화하자 의견수렴과 개정을 거쳐 2010년 1월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REACH)」를 국무원에서 통과시켰으며, 중국의 REACH는 운영 및 관리면에서 EU의 REACH와 유사하여 역내 기업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고 미등록시 역내시장의 진입이 금지된다.

또한 신고 화학물질이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정보를 담은 위해성 평가보고서와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국의 REACH는 EU의 REACH와 달리 신규 화학물질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원가상승 압박이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화학

134) 부품 및 주요 원재료의 명세서, 영문(중문) 명패 및 경고 표기(만약 있을 경우), 동일 신청단위 내 각 제품 모델별 원자재 사용 차이에 대한 설명, 영업허가증, 일치성에 대한 명시.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원료나 제품의 산업에 타격이 예상되며, 신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으로 원가상승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2> EU REACH와 China REACH 비교

구분	EU REACH	China REACH
시행일	-2007년 6월 1일	-2010년 10월 15일
대상물질	-기존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
의무자	-역내 제조사, 수입자, 유일 대리인	-제조사, 수입자
시험기관	-국제공인분석기관 자료 인정	-환경보호부 지정 중국 내 시험기관 -국외의 경우 GLP 인증기관
분류톤 수	-1, 10, 100, 1000톤 이상	-1톤 미만, 1톤 이상, 100kg 미만
위해성 대책관리	-10톤 이상 등록 시 화학물질 안전성보고서(CSR) 제출	-1톤 이상 등록자, 가공자, 사용자는 등록증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대책 수립 의무
벌금/제재	-등록되지 않으면 EU 역내에서 제조 또는 시장 출시 불가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 벌금 부과 -신고/등록되지 않으면 중국 역내에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금지
기타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신고, 평가, 허가, 제한으로 구분	-일반신규, 위험신규, 중점환경관리 위험신규화학물질로 구분 -취급량 1톤 미만일 경우 간이신고, 특별간이신고 가능 -공동신고 가능

자료: 장현숙(2010), 정환우(2012)에서 재인용

3.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¹³⁵⁾

1) 중국의 SPS정책과 WTO체제와 합치성

135)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182-184. 참조 정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란 인간 위생을 위한 보호조치 및 이러한 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 관련 국제 규범을 통칭하는 것으로, 동식물 병해충, 식품, 음료, 사료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등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기존의 GATT체제 하에서도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GATT 규범의 예외로 인정되었으나, 통보 의무가 없었으므로 각국은 이 예외조항을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후 UR협상에 따라 농수산물 무역이 확대되면서 이 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생검역을 GATT 다자 간 무역체제 내로 편입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WTO/SPS 협정이 1995년에 체결되었으며, 이 협정에서 각국의 위생검역조치는 자의적이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서는 아니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의 SPS정책은 건강 및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the State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RC for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과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the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RC) 2곳이며, 근거법률은 「상품검사법」과 「검역법」이다. 중국의 SPS 규제는 법규 미비,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위험평가, 투명성 등 규범상의 한계와 규제시스템, 설비, 인적 여건 등의 미비 등 제도·집행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 식품관련 규제

중국은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의 경우와 같이 매 품목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수속 중인 서류의 수정 시에도 별도의 요금에 부과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위생허가는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개 1~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검사비용

은 연구검사기관이 검사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배의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

<표 III-13> 중국의 위생검역규범과 WTO규범의 합치성 평가

분 야	내 용
위생검역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정부의 조치에 따른 국제무역 제한 가능성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문 규정 부재(「수출입동식물검역법」), 표준, 지침 및 권고(SPS 3조) 근거 규정 부재 및 적절한 위생보호수준(SPS 5조)에 대해서도 미규정(「수출입동식물검역법」), SPS 5조 7항의 예방적 조치 미규정(「수출입동식물검역법」), 기타 WTO 가입 이후 실질적 위생검역규범 개정 미미 등
국제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검사표준 미통일(즉 중국내 검역요건이 수출입검역 요건보다 덜 까다로움), 동물방역 박멸과 제어 분야에 관련 표준문건 부재, 역병 상황보고, 유행병학 감시와 측량분석 분야에서 중국 규정과 국제적 수준 간 상당한 격차, 동물사육, 운송, 도살, 동물제품 가공 및 운송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통일된 규정 부재, 역병 진단방식, 수의실험실 관리 등 분야에서 이미 반포한 표준도 불충분한 경우 다수
위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평가와 관련된 입법 부재, 심도 있는 연구 부재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법규 다수가 내부적인 법률로 투명도가 낮음, 관련 법규 및 조례도 상당 부분 불완전, 예)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물검역법」, 「수의약품관리조례」(국무원),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국무원) 등

자료: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p.183.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한국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첨가물의 경우는 각국마다 사용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 기준은 각국의 식습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설정되는 관계로 기준에 대한 합의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수입식품표시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원 제조국의 모든 외국어 표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¹³⁶⁾.

136)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186-187.

<표 III-14> 중국 위생검역제도와 WTO 제도의 합치성

구 분	내 용
규제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한 정부기관에 규제 권한 분산 (규제 참여기관) 위생부, 농업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무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 (결과) ①식품안전 정보의 흐름을 감소시키고 기관간 협력 방해, ②기관별 규정과 표준간에 부조화 발생, ③책임 회피와 전가 사유
자금· 검사검역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위생검역자금 투입액 191개국 중 188위(02년) - 검역검사 설비 낙후, 모니터링 기술 능력 낮은 수준 - 많은 항구에서 포장 해체 검사 및 관능검사 방법에 의존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요원 부족 - 연령 과다, 직무제교육 부족, 지식 갱신 지연

3) 의약품 규제

중국은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80%를 공급하는 의약품 생산대국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의약품 생산국을 목표로 각종 제도의 정비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SFDA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시장진입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중국 수입약품의 심사·허가 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서는 「수입약품관리방법」을 들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SFD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수입 시마다 S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해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의약품 등록 시 요구하는 규격이 중국약전(CP137)269; 中國藥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의약품 심사 시 타국가의 인증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약전을 적용한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137) CP: Pharmacopoeia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제 4 장 중국의 수입통관 제도상 문제점 과 한국기업의 시사점

제1절 중국의 수입통관상 문제점

1. 관련 법규상 수출입 규제

1) 관세율과 관세가격 비공개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관세를 지속적으로 낮추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잠정관세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 잠정관세율 적용된 품목은 총 767개이고 평균 잠정관세율은 4.4%로 기록하였다.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에는 수출입관리 강화 및 국제무역분쟁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CNC 크랭크축 연마기, 3D프린터, 용접 로봇, 수정, 알렉산더 보석등 품목을 추가하여 수출입세목은 2013년의 8,238개로부터 8,277개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최혜국 세율 이외에도 ‘중·아세안 FTA’ 조기정착을 위한 특혜세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조기 자유화(Early Harvest)’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3년의 경우 홍콩산 제품 1,760개 품목과 마카오산 제품 1,271개 품목에 대하여 영세율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¹³⁸⁾.

중국 관세부과 기준 가격은 「공식가격에 따른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에 공포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하여 일부 물품의 과소평가(under value) 및 덤핑 방지하기 위해 해관이 정한 가격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중국은 WTO의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WTO 관세평가제도에 부합하고 있으며 수입화물 과세가격심사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즉 중국 정부가 제시한 공식가격에 의거하여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은 최근 수입된 석유, 원유, 화학제품, 야금원료, 대두 등이 천진항을 이용하여 공식가격책정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수입화물이 「수입화물 가격책정 공

138)

· 외교부, 「분야별 통상환경」(2014 외국의통상환경), 2014.12. p.10.

식 상품리스트』에 통해 제품의 경우 공식가격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수입지역 직속해관에 계약문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관은 수입화물 신고할 때 결산가격이 가격책정공식에 의거하여 결정된 경우는 결산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심사한 후에 발표한다. 결산가격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납세인은 해관에서 세금담보금을 납부한 후 화물을 수취가 가능하다. 결산가격이 확정된 후 해관에서 결산가격에 기초해 과세가격 심사를 시행한다.

기준가격제란 해관이 내부적인 정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평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즉 해관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정한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상업송장이나 실적거래가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일체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중국 해관은 기준가격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부과에 대한 산정기준을 질의해도 응답이 없다. 그리고 해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통관물품의 억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수입금지

수입금지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주요 안전문제, 국가안보,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일부 관련 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 1월부터 HS 8단위 기준 144개 품목¹³⁹⁾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產品進出口司)이 인정할 경우만 제외된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에 있는 전자상품관리국을 통해 신청과 허가를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고 기계 및 전자제품(2차 수입금지품목)은 제한적인 수입에 대한 허용되는 경우 및 승인절차상 복잡하고 중고 기준이 불명확하다. 중국은 <수입금지화물목록>에 통해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 신청과 허가절차를 밟게 하고 있

139) 동식물 보호,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44개의 수입금지품목을 지정
 - 제1차: 호골, 서우각, 아편 등 국제조약에 따른 7품목 (2001년 12월 20일 발표)
 - 제2차: 중고 자동차, 중고 환자감호기기 등 중고 기계, 전자제품 68품목(2001년 12월 27일 발표)
 - 제3차: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환경오염 유발 고체 폐기물류 18품 (2001년 12월 23일 발표)
 - 제4차: 중고 의류, 피혁폐기물 등 환경오염 유발 고체 폐기물류 16품목 (2002년 7월 3일 발표)
 - 제5차: 폐기냉장고, 폐기컴퓨터 등 환경오염 유발 고체 폐기물류 21품목(2002년 7월 3일 발표)
 - 제6차: 폴리염화페닐, 다이옥신 등 국제조약에 따른 화학제품 17품목 (2005년 12월 31일 발표)

는데 2차 수입금지품목(중고 기계 및 전자제품) 중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공사가 인정한 경우는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외국계 기업들이 이들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의 전자상품관리사(機電產品管理司)를 통해야 한다. 이러한 중고제품인 경우 수입절차에 대해 수출국들은 중국 현지공장으로 중고기계설비가 수출할 때 선적 전에 중국 질량검사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제출서류가 많고 승인절차도 복잡하며 검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중국에서 '중고'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수출시 애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¹⁴⁰⁾.

수입금지화물품목과 더불어 수입을 제한된 제품 종류의 사용가능한 원료 폐기물 리스트 및 자동수입 허가관리종류의 사용가능한 원료 폐기물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 방사성오염이 있는 폐기금속,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온 관련 동물과 동물의 제품, 고기나 골분 등의 동물사료와 동물 원본성 생물 제품, 우측용 핸들, 중고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티타늄 재료, 중고 티타늄 합금 주철, 페로티타늄 합금 자투리, 티타늄 재료, 티탄철 합금속 법정 검증 제품,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멸종위기 동물 및 생물, 가짜 총, CFC-12 에어컨 냉각기술을 사용한 자동차 및 CFC-12 냉각기술을 이용한 자동차 에어컨 컴프레서 등이 있다.

3) 수입허가

수입허가는 현실적으로 중국 등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귀금속, 일부 원자재, 수송기기, 기계류, 전기기기, 석유제품, 섬유류 등 일반적인 제조업제품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허가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수입업자에 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무역부 또는 주무부처의 특별 관리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¹⁴¹⁾.

중국은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허가증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¹⁴²⁾. 자국 산업의 보호 및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

140) - 외교부, 「무역장벽보고서」(2014 외국의통상환경), 2014.12. pp.27-31.

141)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분야별 통상환경」(2014 외국의통상환경), 2014.12. p.51.

을 억제하는 것은 수입허가증관리제도의 중요한 일환이다.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화물진구허가증관리판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부터 현재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발급기관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성의 대외경제무역상관부무,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특과원 관사처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에 외환관리,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제품이 자동수입등록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¹⁴³⁾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품목은 1,098개였다. 2000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HS 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장괴(HS 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2014년 현재 599개 품목으로 증가하며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신고제도로서 해당업체가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관공실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플라스틱 중간원료의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

142) . 외교부, 「분야별 통상환경」(2014 외국의통상환경), 2014.12. p.44.

143) 2005.1.1일 시행

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모든 수입자는 국가 환경보호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 및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 제한 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¹⁴⁴⁾.

4) 수량제한 관세할당제

중국은 WTO가입 이후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기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다. 그중에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변경과 실시하고 있다¹⁴⁵⁾. 2010년과 2011년에 밀 등 8류 45개 세목의 품목에 대한 관세 쿼터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쿼터 이외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변화에 한 할증세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환급규정 수시 변경

환급규정 및 절차상의 상관한 정보는 현지어로만 제공되고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없기 때문에 업체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¹⁴⁶⁾.

즉 수출환급률 정책조정에 따라 업체의 해당 수출품목 환급률이 폐지되는 HS 4단위이하의 8단위 코드의 전체 품목의 환급률이 일치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실제 분류코드와 다른 코드로 계속 수출신고를 하던 기업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수출입업체는 해관에 수출입 신고할 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자주 변경되는 수출증치세 환급율 정책에 대비하여 해당 제품을 정확한 HS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환급률을 수시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미 수입관세를 납부한 화물은 품질 및 규격 등의 이유로 인하여 화물은 원상태로 재반출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납세 날로부터 1년 이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관에 서면형식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144) · 외교부, 「분야별 통상환경」(2014 외국의통상환경), 2014.12. pp.51-53.

145) 산업통상자원부 · 외교부, 「분야별 통상환경」(2014 외국의통상환경), 2014.12. p.63.

146) 외국투자기업의 수출규모가 중국 전체 수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증치세 환급규정 및 절차가 모두 현지어로 되어 있음

세금납부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¹⁴⁷⁾.

6) 기타 수입규제

중국은 다양한 기타 수입규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외환관리,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자동수입등록 관리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 2, 3류 상품으로 구분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분급’(分級관리제도)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품은 ‘進口國營貿易管理貨物(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에 의거하여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공급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국영무역전문회사(國營貿易專業公司)가 일괄적으로 다량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품은 국내외가격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무부산하의 지정된 무역업체가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進口指定經營管理貨物)’에 의거하여 총 5종 제품은 천연 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서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다. 3류 상품은 1류와 2류의 제외한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업체가 수입하고 있다.

1997년 4월부터 전시제품 수입관리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정하여 전시용 수입 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되고 전시회 개최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8년 1월부터 안전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을 중시하여 중고기계 전자설비 전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공사(機電產品進出口司)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 상품관리사(機電產品管理司)를 통해 신청 및 허가가 필요하다. 자동차 와 부품의 수입할 경우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深川皇崗)항, 阿拉出口 등 7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자동차 부품은 이상 7개 지역외에 산둥,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향으로도 수입이 할 수 있다. 1999년 1월부터 중국정부는 전자환경, 인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장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입최저가격제, 수입할 때 일정금액

147)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187-188.

이상의 예치금을 의무화하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기도 한다¹⁴⁸⁾.

2. 기술무역에 따른 문제점

중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검사, 수량검사, 중량검사, 포장상태 검사 등 관련 검사제도가 실시하고 있다. 다만 기계,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한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제도가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안전허가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1년 4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강제인증제도가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평가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중국의 주요 기술무역장벽 및 식품위생관련 조치로 나타날 수 있는 장애가 다음과 같다.

1) CCC 인증과 관련된 장애요인

중국 국내에 CCC 제도와 관련된 기관은 총 10개 국가지정인증기관이 있으며 지역별에 따라 157개 국가지정 검사기관이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국내에 생산 또는 수입되는 물품중 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중국 국내에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의 불법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경우 제품을 수입, 판매할 때 행정처벌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002년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가전제품에 대한 검사필수 수입상품으로 리스트(총 62종(188개 HS품목))를 발표한다. 민용물품 수입관련 안정품질검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CCC인증대상품목은 CCC 인증서만 심사하고 기타품목은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2) 식품위생조치

중국에서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품목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에 위생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

148)

· 외교부, 「분야별 통상환경」(2014 외국의 통상환경) 2014.12. pp.68-69.

의 고시한 27가지 효능(한 제품에 최대 두 가지 효능 신청 가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 국내에 건강식품 등록에 대한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한국의 기준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수출입식품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각국마다 사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라 첨가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국내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수출시 수출회사에서 별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산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국제적으로 우려가 증가하여 수입되는 외국산 식품에 대해서도 상응한 정도의 검사강화가 지속적인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식품에 대해 안전성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3) 항구별로 상이한 라벨·포장기준 적용

포장, 라벨 등 제품표기사항의 등록 문제가 각 지역 상검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등 통일되지 않고 있다¹⁴⁹⁾. 수입식품의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중국어 라벨이 필요하다. 2010년 6월 이후에는 스티커 형식의 라벨이 금지되었으며 반드시 포장지 라벨만 가능하다. 특정 해관에서 라벨 기준이 변경된 후 기존 라벨을 모두 폐기해야하는데, 캔 맥주와 같은 종이 라벨인 경우 제외 라벨 기준이 바뀌면 전 물량을 폐기해야 한다.

한편, GATT 8조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에 의거하여 반드시 지정 라벨업체 사용이 요구된다. 만약 통관 대리인에서 지정한 라벨 업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지정회사에서 제작하여 추가비용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의 위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요구된다.

149) 들면 상해 상검국의 비안(備案, 통관 전 중국 세관의 심사절차)내용이 청도에서 통용되지 않고 심지어 청도 내에서도 항만에 따라서 비안절차가 다르고 통용이 되지 않는다. 청도 상검국의 경우 외포장 비안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1개 제품 신청시 처리에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업무진행이 매우 느리다.

또한 2000년 4월부터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규정인 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시행하고 있는데 수입제품의 포장에 원래 외국어로 표기되는 것을 중국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4) 의약품 수입통관지 제한

중국 ‘수입약품관리방법’은 수입약품의 심사·허가 업무에 주요 관리규정이며 제 3조에 의거하여 약품은 반드시 국무원(State Council)은 약품수입을 허가한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해야 한다. 수입약품은 반드시 국가약품감독관리국(State Food Administration)이 발급한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할 때 국가약품감독관리국(SFDA)으로부터 관련 위임받은 수입항의 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과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한 해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업체와 구매계약을 맺은 경우, 화물의 도착지는 약품수입이 허가된 항구에서만 가능하며, 중국 내 처음 수입되는 약품과 SFDA가 규정하는 생물제품은 국가의 특별승인을 받은 항구로 수입이 가능하다¹⁵⁰⁾. 즉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FDA)은 본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시장진입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수입신고할 때 최초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하여 그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수입자는 수입항을 선택 시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 SFDA는 국내 유사한 종류 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중국약전(CP)이 아니라면 인정을 받지 못하다. 수입허가 심사를 할 때 다른 나라의 공정서를 인정 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단정 지을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국 자체의 규격 CP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약품 등록을 신청할때는 수입약품인 경우 반드시 중국에서 실행한 임상시험을 통해 자료 제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약품 등록증의 유효기간 발급날짜로부터 5년 이내 등록증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150)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186-187.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지난 경우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3. 수출입통관상의 문제점

1) 중국의 무역거래의 복잡성

<표 IV-1> 중국과 한국의 무역 분야 순위 비교

구분	중국	한국
수출필요서류(개수)	8	3
수출소요시간(일)	21	8
수출소요비용(US달러/컨테이너)	620	670
수입필요서류(개수)	5	3
수입소요시간(일)	24	7
수입소요비용(US달러/컨테이너)	615	695
무역분야 순위	74	3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p.184, 202. 참조 작성.

<표 IV-2> 중국 수출입 소요기간

(단위: 일, 달러)

구분	수출소요기간	수출비용	수입소요기간	수입비용
서류준비	14	305	15	260
세관통관	2	80	4	80
항만(터미널)	3	140	3	140
내륙운송	2	95	2	135
합계	21	620	24	615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2011년에 발간된 「Doing Business」 보고서¹⁵¹⁾는 2010년 한 해 동안 183개국에 대하여 부문별로 조사 평가한 내용을 보면, 「Doing Business 2011」 보고서상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시(Starting a business), 건설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151) (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명으로 발표하고 있다.

taxes),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 및 폐업(Closing a business) 등 9개의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¹⁵²⁾.

이 무역에 대한 분야 순위를 매길 때에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와 수출입에 사용되는 소요 일수 및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적을수록 그리고 수출입에 사용되는 소요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순위에 오를수 있는 형식으로 반영되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종합 순위는 189개국 중 74위로 중국의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 및 수출입 소요시간상에 한국보다 많고 이 때문에 해외 수입 회사에게 불이익을 초래된다.

중국의 해상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8가지로 조사된바 있으며, 서류준비는 수출통관 국내 운송 항만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수출 소요일은 총 2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에서 필요한 서류는 5가지로 조사되었고 서류준비를 포함한 수입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업무까지 포함해 수입에 총 24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국의 해상 수출입 비용은 컨테이너 한 대 당 약 1,85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고 있다.

2) 통관절차의 일관성 · 투명성 결여

중국의 각 지방마다 해관의 품목을 분류함으로써 및 과세가격 산전등 제멋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물품납입지연, 계약을 파기시키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21도인 주류에 대해서 A해관은 도수를 좀 더 높여라고 하였고 또 다른 해관B는 도수를 낮추라고 얘기한다. 즉 동일 해관 안에서도 해관장이 바뀌게 되면 이전에 했던 관행에 관해 관리되어온 모든 부분은 모두 무시되고 정책이 바뀌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해관의 제품품질 판단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제품의 선택 크기 등 마음대로 판단되고 있으며, 중국 중앙정부의 수입금지 해제 결론이 지방에 있는 정부까지도 전달이 잘되지 않아 다른 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자동수입허가제도의 실시, 특수위생허가증의 구체 요구, 가소제보고서의 제출 요청 등 수입제품에 대한 수입조건을 사전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업체들이

152) 2014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9년 한국의 구제역 사건 발생 이후 중국은 사전고시 없애지고 자동수입허가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를 취득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 3년까지 소요되었다. 그리고 어묵의 경우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이 포함된 위생허가증을, 주류와 음료수의 경우 가소제검사보고서를 요구하는 사전고시 없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도 한다.

부당한 행정 처리·요구에 의해 통관이 지연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물(마른미역, 건새우 등) 비닐포장 제품을 식품으로 판단하는 중국 상검국 및 수산물로 판단하는 중국 식약청 간의 소관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해당 물품을 자체 폐기한 사례도 있다.

또한 동일한 품목에 대한 각 지역의 해관담당자마다 HS 코드 분류가 상이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해관담당자를 바뀔 경우가 발생하며 새로운 세 번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기업에게 관세를 증가시키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 해관은 바나나우유를 음료로 분류하여 유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15%를 35%로 관세율 적용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ion)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통관에 기간이 긴 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 통관 소요시간 지연

최근 중국 해관의 수입물품에 대한 대대적인 밀수단속 조치의 일환으로 천진, 상해 등 주요 항구세관에서 통관심사가 강화되면서 서류의 위변조 및 통관물품에 대한 실사가 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항구마다 통관물량 체증으로 통관지연이 가중되어 투자업체에서 원자재를 적시에 공급받지 못해 물품의 수출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등 관련업체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세관에서 상품분류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대련세관은 한국의 투자업체에서 수입한 화물을 1개월이 넘도록 통관시켜 주지 않아 통관지연에 따른 영업손실은 물론 적지 않은 창고보관료까지 지불한 사례가 발생했다.

수입하는 화물이 신개발품인 관계로 중국 세관원이 상품분류를 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1개월이나 지체하여 창고보관료까지 물리케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입항즉시 적하목록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원자재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고, 토요일 휴무로 모든 작업 및 세관업무 등이 중단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므로 토요일 업무가 요망된다.

한-중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및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수출입 당국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의 수출입 통관 시 서류심사 간소화, 물품검사 축소,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서로 인정한 협정을 말한다. 한-중 AEO MRA는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4년 4월 1일부로 협정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 2014년 5월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라 2013년 시범 운영 동안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한국 AEO 업체 수출물품에 대한 중국 경내 세관 통관시 소요 시간이 62%나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번 결과는 MRA가 첫 체결된 시기의 전후 한 3개월 간의 항공과 해상화물 수출입 건에 대한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것인데 중국과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한국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4) 통관항 임의 지정

중국 자동차산업정책의 제5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완성차(자동차)는 대련(신항), 천진(신항), 상해, 황포, 만주리, 황강(심천) 등 6개 지정항구를 이용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중국은 수입의약품에 대한 지정된 19개 도시(항구)를 이용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 도시(항구)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지역마다 통일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최초로 수입신고한 항구를 이용¹⁵³⁾해서만 이후의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

153) 를 들면 중국 국내 해운노선 변경 압력으로 인해 효율적인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중경→상해(통관) → 연운항(통관) → ferry 이용→한국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운송사들은 중경세관으로부터 중경(통관)→상해(통관)→ferry 이용→한국 노선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해당 운송사의 경우 연운항을 이용하는 것이 운송비 및 배송시간 측면에서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경세관은 세수 확보를 위해 중경세관에서 통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될 경우 물류비 등 관련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5)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통관기한은 수출입화물이 개항지에 도착 이후 해관통관 시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부터 14일 이내이며 중계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이나 지정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를 말한다. 수입화물의 수취인과 그 대리인이 규정신고시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일정체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물류운송에 해운, 항공운수, 도로운송 등 방식에 대한 수입화물의 체납금 징수기간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날부터 15일 이내 수입통관의 종료해야 하며 중계운송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과 화물의 지정도착지에 도착하고 도착 날부터 15일 이내 수입통관의 종료해야 한다. 체납금은 통관신고일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고, 체납금의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10위안이다¹⁵⁴⁾.

6) 이중 세관검사

이중세관검사는 발취검사를 실행한 제품에 대해 추후 전량검사를 다시 실행하는 것이다. 이중세관검사로 인해 납기지연인 뿐만 아니라 비용증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검사는 통관신고기업이 신고와 접수를 하기 후에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의 신고내역에 대한 일치하든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해관절차이다. 수출입화물의 실적상황과 서류신고내역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 서류를 심사하고, 허위, 사기 등 밀수, 위법행위 및 기타문제를 다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화물검사는 해관의 감독지역 내에서 진행되며 검사와 관련된 공식적으로 규정이 없는 경우 해관담당자가 자체 판단하여 마음대로 임의하게 정하기 때문에 발취검사를 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전량검사를 재실행하는 이중검사의 애로로 될 수 있으며 이에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비싼 원자재 통관 시 흔히 발생하며, 해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필요 자재량 보다 많이 수입됐다고 생각할 때에도 검사강도를 다르게 적용한다. 원자재의 경우 5~10%만 검사하는 데 반해, 설비는 100% 검사하고 통관수속이 완료된 후에도 각 공장의

154)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187.

관할지 해관에서 재통관 수속이 진행되며, 지역과 해관원에 따라 검사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¹⁵⁵⁾.

제 2 절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관련 법규상의 시사점

1) 법규상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바 대로 중국의 관세관련법규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한국관세법은 기본법으로 관세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을 실시하기 위해 관세법에서 규정한 관세법시행령과 필요한 사항과 동 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 및 관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관세법의 총칙에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가, 징수, 세율, 품목분류, 감면, 환급 등 납세자의 권리를 다룬 후에 운송수단 및 수출입 통칙을 다루고 있고 세칙과 연결되어 일목요연하게 연결되지만, 중국 관세법에서 총칙과 연결해서 운수기관, 수출입화물 등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수출입화물 부분에서 통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통관에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관세법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공무원(해관총서)의 결정에 따라 인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¹⁵⁶⁾.

둘째, 한국의 법령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중국의 관세법은 해관법이 제외하고 다른 법을 만들어 규율하고 있다. 즉 한국은 법령이 한 개만 연결되어 있으며 상위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을 제정하지만 중국의 법령은 관세법 하나만 아니라 수출입관세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보완하기 위해 세관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그 외에도 원산지관련법규, 통관기업등록에 관한 법규, 세관기업분류법규 등 아주 많은 법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당사자

155)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188-189.

156) 라공우 외,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pp. 104-106.

나 연구자들도 체계적인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세제, 중국해관법에서는 납세의무자는 “수입화물의 수하인”, “수출화물의 적송인”, “입출국 물품의 소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다만 중국은 수출화물에도 수출관세가 부과되는 관계로 수출화물 적송인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해관법에서는 정해진 기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일부터 일수에 따라 체납세액의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 납부 연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세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1일 당 0.05%의 체납금을 가산하게 되어 있어 1일을 1달로 환산하면 1.5%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¹⁵⁷⁾. 또한 중국에서는 수입신고 지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규정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금은 통과신고일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고, 체납금의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10위안이다.

품목분류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¹⁵⁸⁾. 통관대리인 의존을 지양하고,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관세율 및 수출환급율 등에 따른 편법적인 품목분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출입전 사전품목분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품목분류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경우 제도적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신고 관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 및 제시해야 하고 해관의 신고가격 불인정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정확한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2) 수입승인 및 환급시 시사점

중국 해관은 상업송장이나 실거래가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절대로 모든 것을 인정해주지 않아 기준가격을 외부적으로 공개하지도 않고 관세 산정기준을 질의해도 이에 대해 대응해주는 경우도 없으며, 해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통관물품의 압류등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으므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157) 외,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pp. 105-106.

15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225-226.

한다.

그리고 중국은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이와 관련된 물품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중고제품에 대한 수입절차는 수출국들은 중국 현지공장으로 중고기계설비를 수출하게 될 경우 선적 전 중국에서 질량검사국의 허가가 필요로 하고, 그 절차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해서 검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고'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수출 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모두 국가 환경보호 관리국의 허락을 받아야 수입을 권리가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 등 수입량을 유관 부문에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수입하는 과정에 폐기물은 선적 전 검사, 도착한 후에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며 "중국환경보호 제한 표준요구"에 적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환급절차와 규정에 관해 그 정보는 현지어로만 되고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환급률 정책규정에 따라 기업해당 수출품목 환급률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동일한 HS 4단위하의 8단위 코드의 전체품목에 대해 환급률이 일치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실질적인 분류코드와 또 다른 코드로 연이어 계속 수출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자주 바뀌는 수출증치세 환급율 방법에 대비하여 수출입 업체들은 반드시 해관에 수출인을 신고 할 때에 해당제품에 대한 정확한 HS코드로 신고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 기술무역장벽과 식품위생 조치상 시사점

1) 기술장벽

기술무역장벽은 차별을 둔 기준의 적용, 타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이상의 지나친 기술조건,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규제와 과정, 기술규정의 부재 등이 있다. 표준의 경우에는 준수 자체가 상당히 관찮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표준화 기구나 단체 등에서 제시한 표준을 지키도록 법제화 시켜 시장이나 외부의 소비자들은 다른 선택에 의해 실질적인 강제 아닌 강제성이 적용되게 하여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해서 두 나라의 기술규정, 표준, 시험

등 이 모든 절차를 인증하려고 하면 특별한 차이가 없지만 수입국에서 중복적인 절차를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검사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관련된 비용이나 불투명한 규정 등이 기술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뿐만 아니라 상품표시 부착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중복되는 것이다. 그 외에 상품표시부착과 상이하거나 지나친 표시요건 등 기술장벽으로 적용되고 있다.

CCC인증에 대해 중앙정부와 해관 당국에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표준의 불일치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CC인증 마크를 얻게 될 경우 중국 국내 그 현지인을 통한 인증신청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 정부의 결과를 대응하지 않고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그 해당 나라의 자국 심사기관에 직접 공장 실사를 실행하고 있어 CCC인증을 받는 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고 있다.

통상 CCC마크를 취득하기까지는 6개월에서부터 많게는 1년까지 소요되고 있는데, 그 이유중 하나는 중국이 외국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y)의 공장 결과적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므로 많은 지적이 되고 있다¹⁵⁹⁾.

중국 국내에 인증기관을 세워야만 KC등 인증의 중국내 실사 공장, 관리를 할 수가 있으며, 일부 중국 진출 한국 심사기관에는 KC인증 업무를 이미 진행하고 있어 많은 파장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에 인증기관 설립을 위해 10명 정도의 이상의 전담인력 고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정도의 인력을 인용,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한국의 인증기관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에 CNCA 비준을 받은 인증기관 174곳이며, 각종 제품 ,서비스 인증, 관리시스템, 인증과 서비스 등으로 관련하여 2011년 기준으로 발행된 증서는 총 177만개, 인증획득기관은 61만 곳이다.

2) 식품위생 관련 규제

중국은 매 품목마다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또는 의약품인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위

159)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172-175. 참조 정리.

생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가 아주 까다롭고 수속 중인 서류일 경우 수정이 필요하게 되면 별도의 요금이 있는가 하면 과도한 비용이 문제점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중국의 SPS 규제는 법규 미비,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것과, 투명성, 위험평가, 등 규범상의 규제시스템과 한계, 설비 여건 인적 등 같은 제도 집행상의 문제가 여러 방면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가 정한 보건식품의 경우 고시한 27가지 기능을 가진 제품에 한에 위생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런 위생허가는 심사에 사용되는 시간이 길고 안정성 평가자료 등 이에 따른 구비서류가 많으며 비용 또한 많은 소요가 되어 수입장벽으로 적용하고 있다.

각 지역에 상검국마다 포장, 라벨 등 제품표기사항의 등록 문제에 대한 아직 통일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식품의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중국어 라벨이 작용하고 스티커 형식의 라벨이 금지되며 반드시 포장지 라벨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통관 대리인에서 지정한 라벨 업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지정업체에서 제작하여 추가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의약품 등록 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에서 임상실험 결과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며, SFDA는 국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따라 약품수입허가를 결정하며, 중국 내 동류약품이 포화상태인 경우 수입관련 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 시 엄격히 적용하는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 통관 절차상의 시사점

1) 수입통관 절차상 시사점

해관, 무역통계, 세금징수, 등 수출입신고 시 중요한 영향을 발생하는 부적절한 신고의 사례 (수량, 가격, 원산지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바 있다. 부실신고는 밀수 거짓신고와 함께 여겨지고 있으며, 고의가 없는 부실신고 인 경우 주관적인 해관감과 혹은 관세 포탈 등의 고의가 있을 경우 이에 해당된다. 신고에 따른 내용은 분석단계나 심사에서 발견될 경우 일반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됨으로 해관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해관 조사 시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로 하며 해관의 오해를 처음부터 불식시키려는 그에 따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부실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우수·성실한 기업들을 통관 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수출입 신고 사전 및 화물분석 품목분류제도를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추가에 따라 체결 또는, 수입계약서 통관위탁 협의 시 부실신고 책임조건을 또 다시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¹⁶⁰⁾.

법규를 미준수의 경우에 대한 내용은 가공무역기업의 비준 받지 않은 국내 판매 등 그에 다른 위험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비준 받지 못한 국내 판매에 관해 과태료로 가산세가 더해지거나, 하향조정 기업분류 등급 등의 행정제제가 따를 수 있다. 허위신고에 관해 밀수는 구속이 될 수 있고, 가공무역정지등의 제대 또한 받을 수 있다. 원재료의 수책 불평형에 관해 증치세, 관세, 지연이자 등을 빼앗길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해관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법규 미준수 사항에 따라서는 자진 신고하는 편이 더 좋으나 해관마다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비준 받지 못한 국내 판매에 관해서는 금전적 영향이 심각하지 않은 기술적 실수부분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야 한다.

해관통관에 필요한 전시회 참가물품 등을 제반구비서류 없이 공항으로 입국하다 그에 따른 관련 물품에 대한 통관거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전시회에 필요한 참가물품은 일시수출입 통관 절차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그 규범을 알지 못하는 경우 밀수, 무신고 등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하고 있다.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무부 등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160)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204-206. 참조 정리

면세통관은 가능하나,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품, 소규모 전시회, 상품 판촉행사 또는 학술 세미나 등에 임시로 참가하는 물건들은 면세통관에서 제외된다.

참가물품을 전시회 등 통관시키기 위해 사전에 꼭 전시회 등 주최하는 곳에서 비준서, 일시 수입허가증 등을 준비해야하며, 주관부서의 비준이 없을 경우 일단 보증금을 맡기고 통관한 후 전시회를 끝낸 후 물품 반출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안을 해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대리인이나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이 해관검사 시 화물 훼손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해관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¹⁶¹⁾.

수출환급률에 관해 통관 및 반출입 절차에서 유의할 것은 기업의 해당수출품목이 환급률에 따라 사라지는 경우, 동일한 HS 4단위하의 8단위 코드로 계속 수출신고를 하고 있던 기업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수출환급률 폐지에 따른 피해기업은 품목분류 정정요청등 이러한 절차를 통해야만 한다. 수시로 변경되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기준에 대비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그 전에 해관에 수출입 신고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정확한 HS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포인트며, 자주 환급률의 변화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혹 이미 수입관세를 납세된 화물의 품질이나 또는 규격 등이 상이 한 원인으로 인해 원래대로 화물을 다시 반출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낸 날부터 1년 안에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허가가 된 수출입화물이 정해진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반송수출이 되지 않거나 반입 또한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관에 신고해서 수출입 납세수속을 하고 잉여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로 되어있으며, 징수하는 기간은 화물면허를 취득한날로부터 계속한다. 1개월이라는 시간은 부족하나 15일을 초과했을 경우 1개월로 계산하여 처리하고, 15일을 넘기지 않았을 경우 징수를 면제한다.

2) 통관절차의 일관성 · 투명성 결여에 따른 시사점

161)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210-211. 참조 정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8가지로 조사됐으며, 중국의 해상 수출입 비용은 컨테이너 당 약 1,850달러의 금액이 쓰여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서류준비는 수출 통관 국내 운송 항만에서의 업무를 포함해 수출에는 총 21일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 수입에 필요로한 서류는 5가지이며 수입통관 및 국내 운송, 서류준비 포함 ,항만업무 등 수입에 총 24일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안에서는 각각의 지방 해관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 산정 등이 자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나라 기업들이 계약과기.작품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해관 안에서도 해관장이 바뀌어 버리면 이전 관행에 대해 관리되었던 부분도 무시되고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서 해관의 제품 품질판단 기준이 애매하여 제품의 크기 등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 중앙정부의 수입금지는 해제 결정이 지방정부까지 알려지지 않아 다른 나라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경도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당한, 행정 처리 및 행정요구에 의해 통관이 늦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산물(마른미역, 건새우 등) 비닐로 포장된 제품을 식품으로 판단해버리는 중국 상검국과 수산물로 중국 식약청 간의 소관 책임으로 넘기면서 해당 상품들은 자체적으로 폐기한 경우도 있다.

3) 통관 소요시간 지연에 따른 시사점

최근 중국 해관의 수입물품에 대한 대대적인 밀수단속 조치의 일환으로 통관 심사가 강화되면서 서류의 위변조 및 통관물품에 대한 실사가 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항구마다 통관물량 체증으로 통관지연이 가중되어 투자업체에서 원자재를 적시에 공급받지 못해 물품의 수출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등 관련업체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세관에서 상품분류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대련세관은 우리 투자업체에서 수입한 화물을 1개월이 넘도록 통관시켜 주지 않아 통관지연에 따른 영업손실은 물론 적지 않은 창고보관료까지 지불한 사례가 발생했다.

수입하는 화물이 신개발품인 관계로 중국 세관원이 상품분류를 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1개월이나 지체하여 창고보관료까지 물리

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입항즉시 적하목록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원자재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고, 토요일 휴무로 모든 작업 및 세관업무 등이 중단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므로 토요일 업무가 요망된다.

제 5 장 결 론

1992년 8월에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으면서 수교한 이래 두 나라는 경제 및 무역통상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급속한 관계 발전을 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수출입대상국, 대상이자 무역흑자 국으로써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다. 중·한 양국 교역의 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2014년까지 63억 7000만 달러와 1992년의 2,289억달러(자료원: 한국무역협회)로 약 37배 규모로 급성장하고 증가하였으며, 인적교류는 13만명에서 691만명으로 무려 53배가 증가를 하였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과 한국의 연평균교역액은 10.6% 성장하면서 연 대비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4년 중·한 양국의 총 교역규모는 2,289억달러(한국 통계)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12년과 비교하며 8.6% 증가하였고 1,459억달러로 기록하였다. 수입은 2.8% 증가한 83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중국에 대해 40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2014년 중·한 양국의 총 교역규모는 2353.7억달러로 2013년과 대비하면 2.8% 증가를 기록하지만 한국 대중 수출은 세계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에 유럽 채무위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외수출이 감소되면서 중·한 양국 무역교역마저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 전체 한중 교역액은 2,289억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38억달러(8.6%) 증가하였다. 이로써 세계금융위기로 급격히 위축되었던 중국과 한국의 위기가 진정되면서 점점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한 한·중 양국의 교역관계는 법적, 제도적, 절차적 규제 등의 상이하고 복잡한 통관절차 환경 등 문제는

국제교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수출입통관과정에서 투명성과 신속성에 불만이 많고 통관절차 상 무역장벽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시간적·금전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통관관련 법규, 비관세장벽 중 기술무역방벽과 식품위생조치, 검역 통관, 수출입통관 시 문제점 등을 연구하여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련 법규상의 시사점이다. 중국 해관법중에 통관에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해관법에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공무원(해관총서)의 결정에 따라 인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입관세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하고 그 법을 보완하기 위해 세관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그 외에도 원산지관련법규, 통관기업등록에 관한 법규, 세관기업분류법규 등 많은 법령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품목분류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통관대리인 의존을 지양하고, 수출입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관세율 및 수출환급율 등에 따른 편법적인 품목분류를 하지 말아야 하며, 가격신고 관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 및 제시해야 하고 해관의 신고가격 불인정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정확한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중국 해관에서는 기준가격제로 인하여 상업송장이나 실거래가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일체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 기준가격을 대외적으로 불투명하고 공개하지 않다. 해관의 요구를 거절할 때는 통관물품의 역류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이와 관련된 물품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중고제품에 대한 수입절차는 수출국들은 중국 현지공장으로 중고기계설비 수출할 경우, 선적 전 중국에 있는 질량검사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출서류도 많고 검사기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중고'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수출시 애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수입자는 수입할 경우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즉 “폐기물수입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 및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인 경우 먼저 선적 전 검사하여 도착한 후 검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반드시 “중국환경보호 제한 표준요구”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무역장벽과 식품위생 조치상 시사점이다.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해서는 상대적 국가의 기술규정, 표준 또는 시험, 인증 절차에 있어 어떠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중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지연, 관련 비용 과다, 이러한 불투명한 절차들이 흔히 기술장벽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외에도 상품표시부착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비슷한 것과 상이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표시요건 등 이러한 점이 기술장벽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제품은 CCC인증과 관련된 외국정부의 검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제품에 대해 자기나라의 심사기관에 의한 직접 공장을 실시하고 있어 CCC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식품위생 관련 규제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복잡하고 많으며 수속 중인 서류를 수정하게 되면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등 과다한 비용이 점점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중국의 SPS규제는 법규가 약해,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투명성, 위험평가, 등 규범상의 한계가 설비, 인적, 여건, 규제시스템 등의 미비 제도·집행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의약품 등록 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타국과 달리, 중국에서 임상실험 결과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며, SFDA는 국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따라 약품수입허가를 결정하며, 중국 내 동류약품이 포화상태인 경우 수입관련 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 시 엄격히 적용하는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통관 절차상의 시사점이다. 수출입신고 시 세금징수, 무역통계 등 중요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실신고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가공무역기업의 비준을 받지 못한 국내 판매 등 법에 따라 미준수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위험한 내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하며 준비해야하고 해관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법규 미준수 사항에 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편이 좋으나 이 또한 해관마다 생각이 상이하므로 조심해야 하며, 비준 받지 않은 국내 판매에 대해서는 금전적 영향이 심각하지 않은 기술적 신고부문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검사기록은 정확하고 명료해야 하는 게 화물검사이다. 검사협조인은 바로 검사기록에 서명해야 하며, 만약 검사협조인이 날인하지 않는다면 해관검사공무원은 검사기록에 이를 표시하고 화물이 장치된 해관감관장소의 경영인으로 하여 서명하게 됨으로써 이를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송수하인 수출입화물 또는 대신해주는 대리인이 해관검사 시 화물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후에는 화물에 파손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해관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잘 숙지하여야 한다.

넷째, 통관절차의 일관성 · 투명성 결여에 따른 시사점이다.

중국내 각 지방 해관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 산정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있어 다른 나라 기업들이 계약파기나 납품지연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일 해관 안에서도 해관담당자가 바뀌면 이전 관행에 의해 관리되어왔던 부분은 철저히 무시되고 정책이 바뀌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불투명한 행정 처리 및 행정요구에 대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여야한다.

그리고 통관심사가 강화되면서 서류의 위변조 및 통관물품에 대한 실사가 병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주요 항구마다 통관물량 체증으로 통관지연이 가중되어 투자업체에서 원자재를 적시에 공급받지 못해 물품의 수출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등 관련업체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상과 같이 중국의 수출입관련 법규, 수출입 통관 절차, 비관세장벽, 수출입통관상의 장애요인을 연구하였으나 중국자료의 비공개, 중국 관련규정의 복잡성,

연구대상의 광대함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사료 된다. 이러한 점은 차후 연구에서 각 부문별 소단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연구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KOTRA, 「중국 국가정보(수입규제제도)」

관세무역연구회, 「중국의 관세 및 통관환경」, 중국관세무역신보, 2012. 1호

관세청,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설명자료」, 2011.

관세청, 「해외통관 제로(Zero) 길라잡이」, 2014. 1.

김민수·전진호 "중국 통관정책에 대한 한국수출 기업의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14권 제2호, 2013.5.28.

김석민 "WTO 무역원활화 논의에 따른 중국의 통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춘계학술포럼대회 발표논문, 2007

라공우 "중국의 의료기기 수입통관·안전관리규정과 통관애로에 따른 한국기업의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16권 1호, 2015.2.28

라공우·강진욱·이선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2.28.

劉洋 "중국 수출입 통관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중 비교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무역학과 2010. 8

박호신·홍승린 "중국 수출입세금제도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 관세학회지, 제11권 제4호, 2005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분야별 통상환경」(2014 외국의통상환경), 2014.12.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아시아 대양주」(2014 외국의통상환경), 2014.12.

안병민 "WTO 무역원활화에 따른 중국통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12. 8.

엽소령, "기술무역장벽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왕방 "중국통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12

이봉걸 "한·중수교 20주년 대중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ISSN 2093-3118, 2012.5.

이서영 "중국의 관세환급이 수출촉진에 미치는 효과분석"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2.8.28

이석, "기술무역장벽이 중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전군중,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2011.

정환우, 「한 · 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실, 2012. 2.

정환우, 「한 · 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실, 2012. 2.

중국 상해 해관, 「2012년 관세실시방안 해설」. 2012.

포봉 · 한상현 "중국관세행정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1호, 2014.2.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한상현 "중국의 품목분류제도하에서 HS부정신고의 법적책임과 대응책" 관세학회지, 제12권 2호, 2011.5.28.

한상현 · 포봉 "한국과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이의신청제도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14권 1호, 2013.2.28

해외식품행정정보 "중국의 수출입 통관제도"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14-48(통권 619호), 2014.12.5.

홍재성 · 이용근, "중국 해관의 통관절차에 대한 문제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 · 태비즈니스연구, 제2권 제1호, 2011.6.15.

<외국문헌 및 법률>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張蕾 (ZHANG, LEI) "中國的加工貿易通關制度及風險管理研究 A Study on Customs Clearance System of Processing Trade in China and its Risk

Management” 中國烟台大學, 2006

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貨物徵稅管理辦法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關稅條例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貨物徵稅管理辦法

中華人民共和國海關企業分類管理方法

<웹사이트>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http://www.cacs.gov.cn/>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구: <http://www.dcj.mofcom.gov.cn>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3389/module7219/page1.htm>

<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016&natnCd=CN>

<http://www.china-certification.com/zh/list-of-ccc-mandatory-products>

<http://www.ccc-cn.org/>

Abstract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Korea Companies under Problems of China's Customs and Import Clearance System

Il-Lim Jo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China's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food sanitation measures, quarantine, customs, import and export customs clearance Problems in order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korea company.

First, the implications o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Chinese Customs does not exist. Depending on the decis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Maritime Customs Service) can solve the problems artificially. And the importer must present the proof of import prices reported, the exact procedure shall require a disclaimer when the declared value pricing methods of customs taxation. In addition, when the importer imports of used products, the approval procedure is complex. As well as to submit many documents also it takes a long test period.

Secondly, the implications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CCC certification of China does not recognize the test results of a foreign government, for all the products have been made by the Examining Authority of China is costly and time consuming to get the CCC certification.

Third, the implications on customs procedures.

Traders reported when insolvency occurs frequently reported cases're getting a lot of point. Customs are advised to report voluntarily on the level of non-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cceptable. It should be noted, because every application is different customs.

Fourth, the implications of the lack of consistency · transparency of customs procedures.

China Customs will enforce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ustoms value calculated arbitrarily. This company in other countries are experiencing a lot of difficulties, such as breach of contract or delivery delays. Even within the same customs area customs personnel changes that have been managed by a previous practice until thoroughly ignored and sometimes occurs when a policy is changing. It should be note, customs delays can occur frequently because opaque administrative process.